

C2008-19-6 | 2008. 6.

# 유자차 계열화 수출전문조직 운영모델 및 매뉴얼

김전김한채    경창연혜상    필곤중성현    부연구위원  
연구위원    연구위원    연구위원    연구위원  
초청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연구 담당

김경필	부연구위원	연구 총괄, 배·감귤·버섯 운영모델 및 매뉴얼
전창곤	연구위원	김치 운영모델·매뉴얼
김연중	연구위원	파프리카 운영모델·매뉴얼
한혜성	연구원	백합 운영모델·매뉴얼, 사업추진 및 활성화방안
채상현	초청연구원	유자차 운영모델·매뉴얼, 사업추진 및 활성화방안

## 안 내 문

---

계열화 수출전문조직 사업 운영과 추진절차에 대한 매뉴얼은 배, 감귤, 파프리카, 백합, 김치, 유자차, 새송이버섯 등 7개 품목에 대해 작성하였습니다. 매뉴얼 내용이 품목별로 유사한 부분이 있지만 용역 과제 발주처인 농수산물유통공사의 요청에 따라 품목별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각각 따로 작성하였습니다.

수출전문조직 운영방안은 수출계열화 달성 목표, 운영방안, 조직의 규모와 기준, 농가규약과 운영협의회 내용을 품목별 특성에 맞추어 작성하였고, 매뉴얼 내용은 수출 추진절차에 따르는 세부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모든 품목의 매뉴얼에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항목들은 사업계획 수립, 농가교육, 수출농가 선정과 계약, 생산·수확관리, 물량수집 및 확보, 선별·포장·저장, 수출·정산, 수출·정산, 마케팅, 결산·평가 내용들입니다. 김치와 유자차는 가공식품의 특성상 원료조달 및 저장, 완제품 가공공정, 안전성 제고를 위한 시설관리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본 매뉴얼이 농산물 생산에서부터 수출에 이르기까지 발생하는 크고 작은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는 한편, 보다 세분화된 내용으로 발전시켜 나가길 기대합니다.

## 차 례

---

### 제1장 유자차 수출현황 및 여건

- 1. 수출현황 ..... 1
- 2. 수출확대 방안 ..... 3

### 제2장 수출전문조직 운영 방안

- 1. 수출전문조직 단계별 달성 목표 ..... 11
- 2. 수출전문조직 운영 방안 ..... 12

### 제3장 수출전문조직 사업 절차별 추진방안

- 1. 사업 추진절차 ..... 50
- 2. 절차별 추진방법 ..... 52

### 부록 1. 일본 후생노동성 수입식품 감시지도 계획 ..... 69

### 부록 2. 최근 일본 수입 통관시 잔류허용기준 초과 농약 ..... 76

### 참 고 문 헌 ..... 87

## 표 차 례

---

### 제 1 장

표 1-1. 유자 재배·생산·수출현황 .....	2
표 1-2. 수출실적별 업체 현황 .....	2
표 1-3. 주 수입국가 시장 규모 .....	3
표 1-4. 일본산과의 가격비교 .....	5
표 1-5. 중국 대형매장 유자차 판매가격 비교 .....	6

### 제 2 장

표 2-1. 유자차 수출전문조직 체계의 유형 분류 .....	13
표 2-2. 유자 품질구성 요소별 품질지표 .....	48
표 2-3. 유자 품위기준 .....	48
표 2-4. 계열화 수출전문조직에서 생산하는 유자차의 품질규격 .....	49

### 제 3 장

표 3-1. 유자 품종별 특성 .....	58
표 3-2. 기상재해 및 생리장해 대책 .....	58

## 그림 차례

---

### 제 1 장

그림 1-1. 유자차 수출목표 .....	8
------------------------	---

### 제 3 장

그림 3-1. 계열화조직 수출사업 추진 절차도 .....	51
그림 3-2. 가공장에서서의 유자차 생산 공정 .....	62

# 제 1 장

---

## 유자차 수출현황 및 여건<sup>1)</sup>

### 1. 수출현황

- 유자 생산량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가격하락에 따른 재배면적 감소로 2003년까지 감소하였으나, 최근 소비증가 및 수출확대로 증가 추세임.
  - 주산지는 전남(고흥, 완도)과 경남(남해, 거제) 지역임
- 유자가격은 1996년까지 3,000~5,000/kg을 유지하다가 1997년 IMF시기에 수요 급감으로 500~800/kg으로 폭락하였으나, 2001년 이후 수출증가 및 건강에 대한 관심증가로 상승세임.
- 2007년 유자제품 수출액은 25.3백만불로 2001대비 8배 증가함.
  - 수출물량 : ('01) 1,257톤 → ('07) 8,359 (6.6배)
  - 수출금액 : ('01) 2,947천불 → ('07) 25,275 (8.6배)

---

1. 농수산물유통공사. 「주요 수출 품목별 대책」 자료에서 인용함.

표 1-1. 유자 재배·생산·수출현황

구 분		1998	2005	2006	2007
재배면적(ha)		5,151	1,301	1,240	-
생 산 량(톤)		18,520	12,077	11,357	-
수 출	물 량(톤)	-	9,957	10,284	8,359
	금액(천불)	-	24,834	30,830	25,275
단가/kg	수출단가(불)	-	2.5	3.0	3.0
	국내가격(원)	3,000~5,000	2,900	3,100	2,370

주: 2006년까지의 수출실적은 유자차에 대한 별도의 품목코드가 없어 타 수출품목과 함께 집계되고 2007년부터 별도 품목으로 집계됨.

- 일본, 홍콩, 중국 등을 중심으로 수출이 급증
  - 2003년까지 홍콩이 1위 수출국이었으나 2004년부터 일본이 1위 수출국으로 부상
  - 유자청 제품이 수출주종을 이루었으나 최근 유자과립, 1회용 유자차 등 신규 제품개발로 수출 증가 전망
  - 유자차 수출전문조직은 총 34업체 정도이며, 이중 1백만불 이상 업체는 6개, 50만불 미만 업체가 21개로 대부분 영세한 편

표 1-2. 수출실적별 업체 현황

구분	계	10만불미만	10~50만불	50~100만불	100만불이상
업체수	34업체	8	13	7	6
비 중	100%	23.5%	38.2	20.6	17.7

- 수출전문조직 물품 수집체계
  - 생과형태의 소비는 거의 없으며 산지농협 등 가공업체에서 1차가공한 제품을 구입하여 유자차로 2차 가공 후 수출
  - 수집체계
    - (직접생산) 농가 → 산지가공업체 → 제조·수출전문조직
    - (OEM생산) 농가 → 산지가공업체 → 제조업체 → 수출전문조직



## 2. 수출확대 방안

### 2.1. 수입시장 분석

- 주 수입국가 시장 규모
  - 일본의 유자재배 면적 및 생산량은 한국보다 다소 많으며 대부분 가공용으로 공급
  - 일본 유자생산 : ('01) 18천 톤 → ('03) 15 → ('04) 20
  - 해외시장에 수출되는 유자차는 대부분 한국산이며, 최근 일본, 중국 등에서 현지생산 증가 추세
  - 중국에서는 일부 한국 업체가 한국산 원료를 수입하여 중국산과 혼입한 제품을 생산·판매

표 1-3. 주 수입국가 시장 규모

단위: 백만불, %

주 수입국가	관세율	수입규모		
		'05	'06	'07
일 본	17~30%	11,657	13,159	9,982
중 국	30~35%	3,173	5,289	5,627
홍 콩	무관세	3,875	4,307	3,610

주: 수출실적 기준(수입국 통계는 별도의 HS코드가 없어 집계 지남)

- 우리나라 점유율 추세
  - 일 본
    - 초창기는 주로 한국식품 전문수입업체를 통해 한국산만이 수입·유통되었으나 일본 업체의 시장참여로 일본제품 및 OEM제품 증가
    - 일본산 유자차는 정확한 유통량을 파악하기 어려우나 일부지역의 특산물로서 지역한정 판매나 통신판매 등을 통해 판매되던 것이 최근엔 현지 가공 일본산 제품 확대로 한국산과의 경쟁 심화
    - 한국산 유자차는 슈퍼나 한국식품점, 통신판매 등을 통해 판매

## - 중 국

- 중국에서 유통되고 있는 유자차는 한국에서 직수입한 제품이 주류를 이루나 일부업체는 한국산 원료를 수입하여 현지에서 제조 판매
- 주로 백화점이나 할인매장을 통해 유통되며 최근 인터넷 등을 통한 통신 판매도 증가 추세
- 최근 북경 대형매장을 조사한 결과, 중국산 유자차가 여러 매장에서 판매되고 있으며, 판매가격은 한국산의 60~85% 수준
- 중국시장 진출초기 북경 대형매장의 유자차 가격은 550g 한 병에 약 40元 (약 4,800원)이었으나 현재 1kg 한 병에 40~50元 수준으로 하락
- 포장형태는 대부분 유리병 포장으로서 용량은 500~700g이 일반적이며, 일부 소매점은 선물용 세트도 구비

## ○ 소비 추이

## - 일 본

- 유자차의 소비는 마멀레이드나 잼처럼 아침에 식빵에 발라먹거나 차를 만들어 먹는 형태가 많으며, 최근 편의점 등을 통해 1회용 포장제품 유통이 늘면서 차형태의 소비도 증가
- 주 소비처는 일반 가정이며, 커피숍을 중심으로 한 업무용 소비도 증가
- 연중 소비되고 있으나 주 소비시즌은 겨울철이며 여름철 소비는 저조

## - 중 국

- 유자차는 중국인이 선호하는 황금색 색상을 띠고 있고, 중국의 전통적인 차잎 형태가 아닌 과실차 형태로 최신의 소비 트렌드에 부합
- 또한, 비타민 C가 풍부하고 미용에 좋다는 홍보가 효과를 나타내면서 특히, 여성 소비자와 노년 소비자에게 어필
- 중국 소비자는 유자차를 연중 소비할 수 있는 품목으로 인식

## ○ 가격 및 경쟁력 비교

## - 일 본

- 국내 원료가격 상승으로 생산원가는 상승하였으나 국내업체간 및 일본산과의 경쟁으로 인한 수출가격 하락으로 수출전문조직의 채산성 악화
- 일본산에 가격 및 품질 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나 일본산에 비해 포장디자인, 소포장, 제품다양성 면에서 열세
- 일본산은 병 포장에 고급 천이나 종이장식 등으로 상품 이미지 고급화

표 1-4. 일본산과의 가격비교

품 목	규 격	일본산	한국산	기타 외국산
유 자 티	300g	840엔	-	-
유 자 차	300g	-	598엔	-
유 자 차	1,100g	-	1,500엔	-

## - 중 국

- 한국산 유자차는 色·香·味가 우수하여 중국산에 비해 품질경쟁력 월등
- 중국산 유자는 쓴맛이 강해 소비자는 한국산 제품을 선호
- 국내업체간 및 중국산과의 과당경쟁에 따른 가격하락으로 수출채산성 악화
- 가격경쟁으로 인한 품질 저급화로 한국산 유자차에 대한 소비자 신뢰상실 우려
- 품질이 조악한 현지 중국산 유통으로 유자차 전체의 이미지 악화 초래

표 1-5. 중국 대형매장 유자차 판매가격 비교

매장명	브랜드명	판매가격	중량	수출업체	비고
wall-mart	A	33.80元	600g	A	한국산
	B	32.80元	600g	B	중국산
	韓晶	29.90元	600g	自然食品	중국산
	花圣	18.80元	510g	花圣蜜蜂	중국산
연사백화점	A	64.50元	580g	A	한국산
	B	44.00元	550g	B	한국산
	C	40.00元	600g	C	중국산
	D	77.00元	700g	D	한국산

자료: 베이징 농수산물유통공사 조사자('06. 2월)

## 2.2. 수출 애로사항

- 생산기반 미흡, 규모의 영세성으로 고품질 유자 생산 한계
  - 고품질 생산을 위해 필수적인 관수시설 등 생산기반 미비
  - 유자 과수의 노령화(40~50%) 및 생산관리 소홀로 유자 공급 불안정
  - 농원관리 부실로 고품질 유자생산 애로(방제불량, 퇴비·비료사용 저조)
- 장기적인 원료 생산 및 공급기반 악화
  - 농가의 재배의지 약화로 폐원·방치, 작목전환·신규 유목식재 저조
  - 원료수매가격의 상승 및 가공업체의 수익률 저하로 가동중단 및 용도변경 등 가공시설 감축
- 저장 유통시설의 부족 및 자동화, 위생처리 시설 미흡
  - 수확 후 대부분 2개월(10월 중순~12월 초순) 이내 가공 생산하여 연중 수출해야 하므로 저장유통시설 확충 절실
  - 소규모 가공업체의 자동화 및 위생적인 처리시설 미흡

- 대부분의 수출이 OEM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국산 유자에 대한 외국 소비자들의 충성도 형성에 한계
  - 자체브랜드 수출 활성화 또는 유자가공업체 공동브랜드 개발 지원 필요
- 다양한 해외시장 개척노력 미흡
  - 생산업체가 영세하여 효과적인 해외마케팅 수행 애로
  - 일본 및 동남아 제외시 현지인 수요창출 전략 미흡
  - 미주·유럽의 경우 교포시장 80%, 중국·일본계 시장이 20% 수준
- 다양한 가공제품 개발이 미흡하여 소비확대 한계
  - 대부분 유자청으로 음료, 잼 등 다양한 가공품 개발 미흡
  - 일본처럼 식초나 간장과 같은 다양한 가공제품 개발을 통한 국내업체간 과당경쟁 회피 및 수익구조 다양화 필요
- 국내 수출업체간 과당경쟁
  - 가공방법이 유자차와 유자즙에만 집중되어 수출 과정에서 국내 업체 간 과도한 가격경쟁이 발생
  - 일부 수출업체의 중국산 혼입 현지생산·유통으로 유자차 전체의 이미지 하락 및 판매가격 하락
- 중국, 일본 등 수입국의 높은 관세 부담
  - 중국(30~35%), 일본(17~30%)

### 2.3. 수출 확대대책

- 기본방향
  - 유자제품 생산원료의 안정적 공급기반 구축
  - 해외시장에서 마케팅 강화
  - 유자차 수출확대 지원을 위한 수출협의회 운영활성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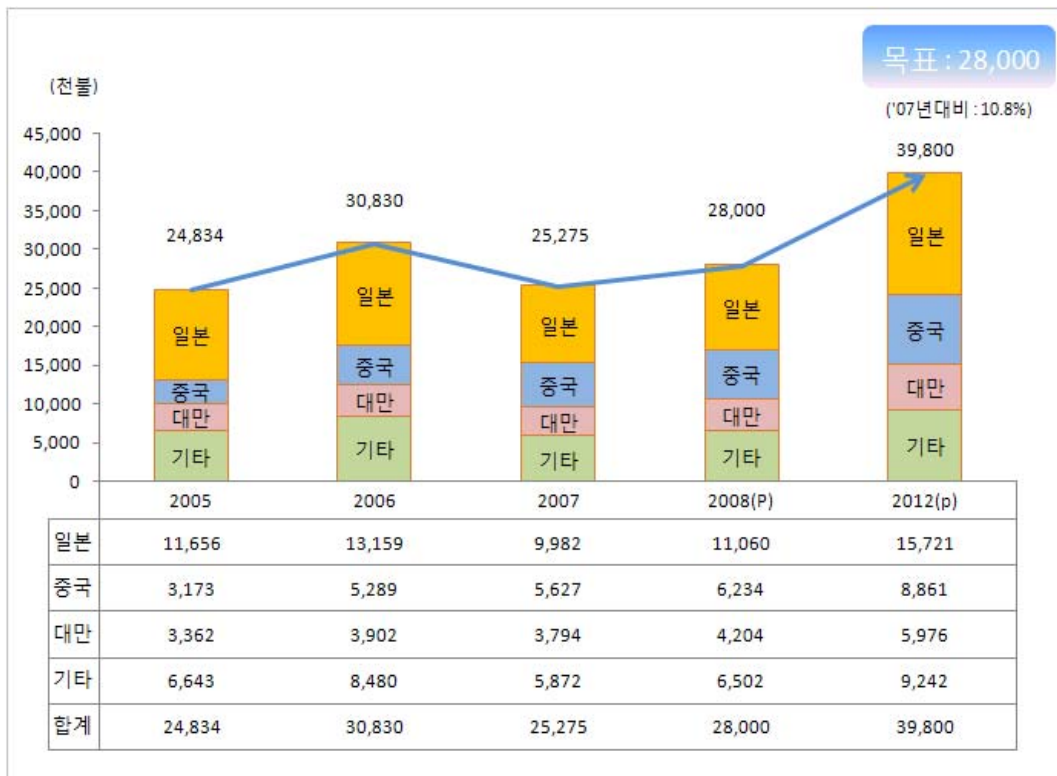
## ○ 수출목표

- ('07) 25,275천불 → ('08) 28,000 (전년대비 10.8% ↑) → ('12) 39,800

- 목표수립 근거

- 수출목표 설정근거 : 최근 5개년 수출증가율이 34.1%로서 가빠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나 '07년 품목분류 코드 생성에 따른 감소분(-18%)을 감안하여 성장률 10.8% 설정

그림 1-1. 유자차 수출목표



주: 2006년까지의 실적은 유자차에 대한 별도의 품목코드가 없어 타 수출품목과 함께 집계됨으로써 다소 과다 계상됨 ('07년부터 별도 품목으로 집계)

## ○ 유자원료의 안정적 공급기반 구축

- 고령화 대비 및 노동력 절감을 위한 자동 방제 · 관수시설 설치 지원으로 생산성 제고

- 유자재배 농가와 유자제품 생산업체의 계열화를 통한 계약재배 활성화
  - 주산단지 조성확대를 통한 생산기반 구축
- 수출전문조직 지원 대책 마련
    - 유자차를 수출전략품목으로 선정하여 집중 지원
    - 유자차 수출전문조직에 대한 자금지원규모 확대 및 금리혜택 부여, 해외 판촉행사 확대, 박람회참가 및 수출 유망품목 선정시 가점부여 등
- 고부가가치 상품개발 및 브랜드화, 품질관리 강화
    - 사계절 이용가능 유자제품 개발 등 다양한 상품개발 지원
    - 수출되는 유자의 90% 정도가 유리병에 포장된 유자차 형태로 수출되며, 10% 정도만 과즙형태로 가공되어 수출
    - 식품연구원 및 산지유자연구회 등에 대한 연구개발비 지원으로 유자 제품의 다양화 및 차별화
    - 유자차와 함께 모과차, 매실차, 오미자차 등 다양한 상품과 함께 포장하여 선물용 수요 확대 등 수출확대 방안 모색
  - 고품질 · 브랜드제품 제조 · 수출을 위한 지원강화
    - 유자제품은 기존 내수용을 수출품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아 수출 확대를 위해 해외소비자가 선호하는 포장디자인, 제품표기 필요
    - 해외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다양한 규격의 용기개발 및 디자인 고급화
- 해외시장 홍보강화
    - 한국산 유자제품을 접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재구매 경향이 있으므로 적극적 시음을 통한 수요저변 확대
    - 대형할인매장이나 백화점 등에서 프로모션 형태의 집중적 광고와 시음행사 실시로 소비자의 인지도 제고
    - 단순한 기호식품 이미지 보다는 건강식품 이미지 마케팅

- 유자차 수출확대 지원을 위한 수출협의회 운영활성화
  - 기능: 생산·가공·수출 과정의 개선사항 발굴 및 유자차 수출 지원계획 수립 시 현장 의견 수렴
  - 구성: 정부, 농수산물유통공사, 생산자단체, 수출전문조직 등
  - 생산자는 지역별, 업체는 수출규모 및 형태별(수출·내수) 대표자로 구성
  - 운영: 반기별 1회 및 수출지원 정책 협의 시 수시 개최



## 제 2 장

### 수출전문조직 운영 방안

#### 1. 수출전문조직 단계별 달성 목표

- 유자차 품목의 계열화 수준 평가
  - 평가 근거: 품목별 수출 선도업체 중심 현장 조사 결과
  - 계열화 수준 평가 척도: 수-우-미-양-가 5단계로 구분
  - 계열화 수준 평가 지표와 평가

계열화 단계별 항목	계열화 단계 평가				
	수	우	미	양	가
· 계약재배 내용 이행	○				
· 수출물량 공급과 내수 출하비율	○				
· 품질관리시스템(ERP, GAP, 이력추적시스템)		○			
· 수출가격 결정구조				○	
· 농가-수출전문조직 연계구조		○			
· 유통시설 가동률 등		○			
· 수출출하 창구 일원화			○		
· 수출브랜드 일원화 및 비중				○	
종합평가		○			

○ 종합 평가

- 유자차는 가공식품에 속한 품목으로서 산지계약재배 결속력이 강하여 계약 재배 이행과 품질관리 시스템, 수출물량 확보 등은 대체로 우수한 단계로 평가되지만, 농가 ID관리나 전산시스템 구축 등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평가
- 또한 총매출액 중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99%로 생산량 중 수출물량 비중이 크지만 수출시장이 일본 등으로 한정되고 선도기업의 국내시장 및 수출시장의 점유율은 높은 편
- 그러나 국가적 대표 브랜드로 출하되기보다는 일본회사의 OEM형식으로 수출되고 있어 수출브랜드 일원화 및 비중은 낮은 단계
- 유자차의 가격결정구도는 수출전문조직이 재배 계약시 납품계약서에 수출 가격을 포함하여 계약하나 유자 생산의 특성상 수출가격을 결정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인해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사후정산제도를 활용

○ 계열화 달성 목표

- 종합평가결과과는 대체로 양호하나 국산 브랜드명 표기가 선행되어야 하고, 시장다변화 및 ERP시스템의 구축, 농가 ID관리 등의 전산화가 필요

## 2. 수출전문조직 운영 방안

### 2.1. 조직 주체

- 계열화 수출전문조직의 운영주체는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무역업체, 가공업체, 농협 등이 될 수 있음.
- 수출전문조직의 성격 및 형태에 구애받지는 않으나 연중 혹은 수개월동안 수출물량을 확보하고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이 있어야 함

## 2.2. 조직 구성

### 가. 조직 체계

- 계열화 수출전문조직은 주도 유형에 따라 무역업체, 단위농협, 영농조합, 수출회사법인, 가공업체 등으로 나눌 수 있음.
  - 농업회사법인↔영농조합법인
  - 무역업체↔생산자조직(농협)
  - 농업협동조합↔생산자조직(작목반)
- 유자차 계열화 수출전문조직은 유자 생산농가(‘생산자 조직’ 포함)와 수출 전문조직이 실현가능성이 높은 계약을 체결하여 수출전문조직 운영주체 중심으로 재배, 수확, 수집, 선별, 가공, 포장이 이루어져야 함.

표 2-1. 유자차 수출전문조직 체계의 유형 분류

유형분류	조직체계	수출 주체	물량 수집-공급체계(계약)
I	농업회사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업회사↔영농조합법인
II	무역업체↔생산자조직	무역업체	무역업체↔생산자조직
III	농업협동조합↔작목반(생산자)	농업협동조합	농협↔생산농가

### 나. 조직주체 자격요건

- 계열화 수출전문조직의 생산 및 상품화 관리 능력
  - 수출 유자차의 생산 및 품질관리 조건이 충족되기 위해서는 품종을 어느 정도 구분하고 통제할 수 있으며, 생산조건이 비슷한 지역단위가 되어야 하며, 수확 후 관리가 종합적이고 일관되게 수행되어야 함
  - 유자차 수출 증대를 위해서 중요한 당도, 안전성 관리가 체계적으로 관리되는 지역의 과원에서 생산된 유자의 물량을 원활히 확보할 수 있어야 함

- 계열화 수출전문조직 운영의 상품화시설, 물류시설
  - 상품화 및 물류시설은 가급적 균일하고 우수한 상품화를 위해 품질수준을 맞출 수 있어야 함
  - 생산 후 선별, 포장, 저장 등을 체계적,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선별장, 저온저장고 등의 시설을 포함하는 산지처리 및 저장시설이 구비되어야 함
  
- 계열화 수출전문조직의 최소 운영 인력
  - 사업 총괄, 기획 인력
  - 안전성·품질관리 등 생산지도 인력
  - 수확 후 관리, 시설관리 전문 인력
  - 해외바이어 파트너/ 마케팅 업무 인력
  - 정산프로그램 담당 인력

#### 다. 농가 자격요건

- 계열화 조직의 구성 및 결속력을 강화시키고 생산-상품화의 일관 시스템을 제고시킬 수 있어야 함.
  - 계열화 수출전문조직 구성 기구에 속하면서 수출전문조직 운영방침에 따르는 생산농가만으로 자격요건을 정해야 함
  - 농업협동조합의 수출농가로 지정된 농가
  - 영농조합법인 가입 농가
  - 수출단지 생산농가
  - 유자 당도, 안전성 등 품질 속성을 향상시키는데 품질개선매뉴얼에 따라 재배과정을 이행하는 농가
  - 수출교육, 재배 기술교육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농가

## 2.3. 조직의 규모와 기준

### 가. 최소 농가 수

- 계열화 수출전문조직 추진의 궁극적인 목표는 수출국의 수입업체(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유자차를 국내 수급여건에 영향을 받지 않고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달성하는 것임.
- 유자차 수출물량 변동과 수출전문조직 및 농가의 출하 비중
  - 현재 유자차 수출물량은 총생산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큼
  - 2006년 총생산량 11,357톤 중에서 수출량은 10,284톤으로 약 90% 비중
- 계열화 수출전문조직의 최소 농가 수
  - 우수 수출전문조직의 경우 유자 수출농가 수는 300 농가 미만임. 계열화 조직의 최소 농가 수는 농가당 수출 출하비율의 크기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수출전문조직당 연간 3,600톤 수출을 계획한다면 연간 5톤을 생산하는 농가라면 최소 농가 수는 1,800농가이어야 함

### 나. 최소 재배면적, 생산량, 수출량

- 유자차 계열화 수출전문조직에 참여하는 농가 수와 재배규모는 최소기준이 정해진 것은 아님. 하지만, 수출물량의 안정적 확보와 품질 균일화 측면에서 가능하면 재배규모가 클수록 유리한 점이 많음.
- 계열화 수출농가에 참여하는 유자 농가의 재배규모는 적어도 500평 이상이어야 바람직함.
  - 생산량: 재배면적 500평(100주×가공량 50kg)=5톤(수율260%)
  - 수출량: 계열화조직에 300농가가 조직화에 가입 가정
  - 나머지 물량은 중간업체에서 매입, 수출물량 확보 최소 농가는 1,800농가

---

2. 정진웅 외. 1997. 「국내산 유자의 가공이용 및 저장성 증대를 이용한 기술개발」 참조 및 현지 수출업체 조사 자료에 근거함.

## 2.4. 계약사항과 운영협의회

### 가. 계열화 수출전문조직 정관

- 정관의 기능
  - 계약의 주체: 계열화 업체
  - 계약 대상자: 계열화 선정품목 원료 생산농가
  - 계열화 수출전문조직 사업 참여 농가의 역할과 의무를 나타내며 계열화 수출전문조직 경영의 내실화를 위한 지침서 역할을 함
  
- 정관에 포함할 내용
  - ① 총칙에 관련된 항목
    - 조직의 명칭, 목적, 사무소의 소재지, 사업내용, 협동조합의 가입, 공고방법, 규정의 제정 등
  
  - ② 조합원에 관련된 항목
    - 조합원의 자격, 조합원 가입, 조합원의 권리, 의무, 조합원 탈퇴, 제명 등
  
  - ③ 출자와 적립금, 지분에 관련된 항목
    - 출자방법, 출자증서의 발행, 출자의 균등화, 법정적립금, 사업준비금, 자본적립금, 적립금의 사용 및 처분, 지분의 계산, 지분의 상속, 조합법인의 지분취득 금지사항, 지분의 양도·양수·공유금지, 탈퇴시의 지분환불, 출자액의 일부 환불 등
  
  - ④ 회계에 관련된 항목
    - 회계 연도, 자금관리, 경리공개, 사용료 및 수수료, 선금금제, 차입금, 수입 배분 순위, 이익금 처분, 손실금 처리 등

- ⑤ 임원에 관련된 항목
  - 임원의 구성, 임원의 선출, 이사회, 이사회의 결의, 이사회 의사록, 임원의 임무, 임원의 책임, 임원의 임기, 임원의 해임, 임원의 보수, 서류비치의 의무 등
- ⑥ 회의 운영에 관련된 항목
  - 총회의 구분, 총회의 소집, 총회의 의결사항, 총회의 개의와 의결정족수, 의결권의 대리, 의사록의 작성, 회의내용 공고 등
- ⑦ 사무국 운영과 관련된 항목
  - 사무국 운영, 국장과 직원, 업무 위촉 처리, 사무국장과 직원의 임명, 서류 비치 의무, 서류 열람 등
- ⑧ 단체 표장과 관련된 항목
  - 단체표장의 사용, 사용방법 및 절차 등
- ⑨ 조직 해산과 관련된 항목
  - 해산 사유, 청산인, 청산인의 직무, 청산재산의 정리 등

#### 나. 원료공급 계약서 (수출전문조직-생산자조직)

- 계약 방법
  - 표준계약서를 참고한 서면 계약
  - 계약내용은 「계열화 수출전문조직 운영협의회」에서 계열화 조직과 생산 농가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
- 원료공급 계약서에 포함될 내용
  - 계약서에는 최소한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함
  - 수출 제품 생산·판매 목적: 수출 제품의 생산·판매를 추진해 나감에 있어서 생산비 절감과 품질향상 등 생산 합리화를 꾀하고 부가가치를 높여나가는 것임. 이를 위하여 구성원 합의하에 수출의 목적, 방향, 전략 등을 명확히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기본사항: 계약상대자 인적사항, 재배면적, 계약물량 등
- 재배과정: 품종, 재배관리, 안전성 준수, 납품방법 등
- 선별과정: 선별기준, 선별방법 등
- 수출과정: 수출지역, 수출가격 결정, 브랜드 사용 등
- 정산과정: 정부나 지자체 지원자금 배분, 수출대금 정산방법, 클레임 처리, 출자 및 적립금 관련사항 등
- 기 타: 농가교육, 계약 위반시 제재내용, 사업계획 수립, 정산, 회계 관리, 평가, 운영협의회 등

#### 다. 납품계약서 (수출전문조직-수입국 바이어 간)

- 기능: 수출전문조직과 수입국 업체 간의 안정적 물량 확보 및 판매 계약
  - 계약의 주체: 계열화 수출전문조직
  - 계약 대상자: 계열화 선정품목 수입국 바이어
  - 공급받는 자로서의 수입국 바이어의 역할과 의무를 나타내며 계열화 수출전문조직의 건전한 소득확보 방안
- 계약 방법
  - 표준계약서를 참고한 서면 계약
  - 계약내용은 「계열화 수출전문조직 운영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반영하여 계열화업체가 수입국 바이어와의 상호 협의하여 가격 및 물량 결정
- 납품계약서에 포함될 내용
  - 납품계약서에는 최소한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함
  - 목적: 수출 제품의 수출을 추진해 나감에 있어서 안전성과 품질을 확신시키고, 적절한 가격을 안정적으로 보장하여 상호 목적을 달성하는 것
  - 기본사항: 계약상대자 인적사항, 계약물량, 납품일자, 계약 가격
  - 유사차 품위기준, 안전성 기준, 납품방법, 브랜드 사용, 상품 홍보 등
  - 정산과정: 수출대금 정산방법, 클레임 처리, 운송료 책임 등
  - 기 타: 계약 위반시 제재내용 등



## 라. 운영협의회

- 목적
  - 고품질 농식품 생산과 수출확대를 위해 육성한 계열화 수출전문조직과 생산자조직 간의 운영 원활화와 구성원의 경제적 이익증진을 위한 주요사항을 협의
- 구성
  - 계열화 수출전문조직과 계열화 참여 농가를 대상으로 구성하며, 필요시 지자체, 농협 등 외부위원도 포함
  - 구성원은 농가 수와 재배지역 등을 감안하여 구성
- 운영
  - 운영협의회는 계열화 업체와 생산농가의 공동이익 증진을 위해 대등한 지위에서 운영
  - 운영방법은 계열화 업체 구성원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
- 업무
  - 운영협의회는 계열화 수출전문조직 유지와 활성화를 전담하는 중요한 요인임
  - 수출전담 인력 확보와 전담부서 설치 등 수출업무를 관리하는 운영협의회 및 조직 구축이 필요
  - 운영조직은 조직 참여농가 교육, 운영협의회 구성 및 관련회의 주도, 참여자의 역할 정립, 품질관리기준 설정, 신규 산지 및 품목 지정과 변경, 마케팅 수립과 판로 개척 및 확대, 홍보 및 판촉활동, 조직운영의 분쟁 및 불만사항 해결 등 수출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전담
  - 특히 철저한 품질관리시스템 확보, 엄격한 품질관리 기준에 대한 통제시스템을 마련해야 함

- 운영협의회는 강력한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전체적인 품질관리 기준을 설정하고 물류와 경로관리 등 상류기능을 수행
  
- 주요 임무
  - 규약제정, 사업계획 수립 등 운영관련 사항
  - 품종, 재배이력 관리, 안전성 확보, 선별 등 품질관리 사항
  - 브랜드 육성, 바이어, 해외판촉 및 홍보 등 수출관련 사항
  - 정산, 회계처리, 조직원 교육, 운영상황 평가 등 일반사항

■ 유자차 계열화 수출전문조직 표준정관 (예시)

정관  
(定款)

○○유자차  
계열화 수출전문조직

##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조직은 농어촌 특별조치법 및 동법시행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조직으로서, 그 명칭은 ‘○○○ 조직’(이하 ‘조직’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2조(목적)** 이 법인은 협업적 농업경영으로 ○○ 지역에서 생산되는 유자의 자율적 생산(제조 또는 가공), 품질향상, 출하조절 및 공동판매촉진 활동을 기하고, 상표법 및 농산물 품질관리법에 의한 단체표장 및 해당상품의 관리를 통하여 조합원의 소득증대와 지역의 친환경유자산업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조직의 사무소는 ○○○도 ○○시·군에 둔다.

**제4조(사업)** 조직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친환경 유자상품의 생산·출하 조절 및 가공·판매·수출 등의 사업
  - 가. 판매 및 소비촉진을 위한 홍보사업(신문·잡지·TV·라디오 등을 통한 광고, 전단 제작·배포, 전시회·품평회, 직거래행사, 유자축제 등 이벤트 개최)
  - 나. 판로·수출확대 및 신규시장 개척을 위한 국내외 시장 조사
  - 다. 생산·선별·건조·저장·포장 등을 위한 공동작업장 및 공동이용시설 설치운영
  - 라. 친환경유자 재배 및 수확 후 관리기술 보급, 생산·출하조절, 공동출하, 유통개선을 위해 조합원에게 실시하는 교육사업
  - 마. 생산 및 판매사업을 위한 농자재 구입 및 포장재 자재 보급
  - 바. 친환경유자 상품 보호를 위한 원산지관리

사. 유통정보의 제공, 농업관측조사, 영농기술 연구개발  
 아. 친환경으로 재배한 유자 식품가공 및 기타제품의 생산과 판매사업.

## 2. 기타사업

가. 전기각호의 사업과 관련된 부대사업  
 나. 친환경 유자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건의

**제5조(공고방법)** ① 조직의 공고는 주된 사무소 게시판에 게시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조합원에게 통지한다.

② 제1항의 공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

**제6조(규정에 제정)** 이 정관에서 정한 것 이외에 업무의 집행, 회계, 직원의 채용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을 정할 수 있다.

## 제 2 장 조 직 원

**제7조(조직원의 자격)** ① 조직의 구성원이 될 수 있는 자는 ○○군 지역에서 친환경유자를 생산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1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1천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는 자
2.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000만 원 이상인 자
3.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4. 2008년부터는 친환경 품질인증 저농약이상 인증 받은 자.

**제8조(가입)** ① 조직의 조직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각호에 기재한 가입 신청서를 법인에 제출한다.

1.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2. 가족관계
3. 인수하고자하는 출자 수

4. 영농규모(재배면적, 생산량, 연간판매액) 및 연중 농업종사 일수
- ② 제1항에 의한 조직원의 가입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에 부여하여 조직원으로서의 자격유무를 심사하고, 가입을 승낙한 때에는 서면으로 이를 가입신청자에게 통지한다. 이 경우 조직원의 자격을 가진 자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가입을 거절하거나 불리한 조건을 제시할 수 없다.
- ③ 가입신청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자금을 납입함으로써 조합원이 되며, 법인은 이를 조합원 명부에 기재한다.

**제9조(권리)** ① 조합원의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분 환불에 대한 청구권
2. 법인 해산시 잔여재산 분배 청구권
3. 법인의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
4. 법인의 제반 회의에 참석하여 의결할 권리
5. 법인의 운영과 각종 사업에 참여하고 이용할 권리
6. 법인이 부여하는 혜택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는 권리
7. 단체표장의 사용에 관한 권리

**제10조(의무)** 조합원의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인의 정관 및 자체품질기준, 품질관리계획서 등 제 규정을 준수할 의무
2. 법인의 운영과정에 성실히 참여할 의무
3. 법인에 대한 출자의무
4. 법인의 운영을 위한 부담금 납부 의무
5. 법인의 의결사항을 준수할 의무
6. 단체표장의 사용조건 및 상품의 특정 품질·명성 등의 자체 관리 기준 및 관리방안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할 의무

**제11조(탈퇴)** ① 탈퇴를 원하는 조직원은 30일전에 탈퇴의사를 서면으로 법인에 예고하여 탈퇴하며 그에 따른 모든 정산은 당해 회계연도 말에 한다.  
 ②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당연히 탈퇴 된다.

1. 제8조에 의한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한 때
2. 사망한 때
3. 파산 또는 해산한 때
4. 금치산 선고를 받을 때
5. 친환경 품질인증이 취소 될 때
6. 지분을 전부 양도한 때

③ 제2항 제1호의 경우는 총회의 의결에 의한다.

**제12조(제명)** ① 조직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조합원에 대하여는 총회의 의결을 얻어 제명할 수 있다.

1. 제11조에서 규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법인의 사업을 방해한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인에 상당한 손해를 입힌 경우
4. 법인을 빙자하여 부당이익을 취한 경우
5. 기타 조합원으로서 적절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법인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한 제명대상자에게는 총회개최 10일 전에 제명의 사유를 통지하고, 총회에서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제명을 결정한 때에는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제 3 장 출자와 경비부담 및 적립금

**제13조(출자)** ① 본 조직에의 출자는 현금 또는 현물로 할 수 있다.

② 현물의 출자액 산출은 이사회(설립시에는 창립총회)에서 정하는 평가를

에 의해 환가한다.

③ 출자 1좌의 금액은 금 ○원으로 한다.

④ 조직원은 1좌 이상의 출자를 불입하여야 하며, 조합원 1인의 출자좌수는 조직법인 총 출자수의 3분의 1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

**제14조(출자의 균등화)** 조직원의 출자를 균등화할 목적으로 소액 출자자에게 그 사정을 고려하여 총회의 의결로써 회계연도 말에 증좌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회전출자)** 조직원은 매 회계연도의 법인의 잉여금 범위 안에서 총회에서 정하는 금액을 출자금으로 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제16조(경비부담)** ① 조직은 제4조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조직원에게 경비를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부과금액과 부과방법, 징수시기와 징수방법은 대의원회에서 정한다.

**제17조(법정 적립금)** 조직은 출자총액과 같은 금액이 될 때까지 매 회계연도 잉여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적립한다.

**제18조(사업 준비금)** 조직은 장기적인 사업 확장 및 다음 연도의 사업운영을 위하여 매 회계연도 잉여금 100분의 20을 사업 준비금으로 적립한다.

**제19조(자본적립금)** 조직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자본적립금으로 적립한다.

1. 자산 재평가 차익
2. 합병에 의한 차익
3. 인수재산 차익
4. 외부로부터 증여된 현물 및 현금



5. 국고보조금 등
6. 감자에 의한 차익
7. 고정자산에 대한 보험차익

**제20조(적립금 등의 사용 및 처분)** ①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적립금과 제20조에 의한 자본적립금은 법인의 결산을 보전하는데 사용한다.

② 법정적립금과 자본적립금은 조합원이 탈퇴하거나 제명 시 지분으로 환불할 수 없다.

③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준비금은 조합원이 가입한 날부터 5년 이내에 탈퇴하거나 제명되는 경우에는 환불할 수 없다.

**제21조(지분계산)** 조직의 재산에 대한 조합원의 지분은 다음 기준에 의하여 이를 계산한다.

1. 납입출자금에 대하여는 각 조합원이 납입한 출자액에 따라 매 회계연도 마다 이를 계산한다. 다만, 그 재산이 납입출자액의 총액보다 감소되었을 때에는 각 조합원의 출자액에 따라 감액하여 계산한다.
2. 회전출자금에 대하여는 각 조합원이 납입한 회전출자액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이를 계산하여 가산한다. 다만, 회전출자금이 감소되었을 때에는 각 조합원 출자액에 따라 감액하여 계산한다.
3. 사업준비금은 매 회계연도마다 조합원에게 분할하여 가산하되 조합원의 출자지분의 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4. 기타 재산에 대하여 법인이 해산하는 경우에 한하여 계산하되, 그 산정 방법은 총회에서 정한다.

**제22조(지분의 상속)** ① 조합원으로서 조합원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분 환불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득한 자가 즉시 조직에 가입을 신청하고 조직이 이를 승낙한 경우에는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지분을 승계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의 가입신청과 법인의 가입승낙은 제9조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3조(법인의 지분취득 금지)** 법인은 조합원의 지분을 취득하거나 또는 담보의 목적으로 수입하지 못한다.

**제24조(지분의 양도·양수 및 공유 금지)** 조합원은 총회의 승인의결 없이는 그 지분을 양도·양수할 수 없으며 공유할 수 없다.

**제25조(탈퇴·제명시의 지분환불)** ① 조합원이 탈퇴 또는 제명되는 경우에는 그 조합원의 지분을 현금으로 환불한다.

② 탈퇴 또는 제명 된 조합원이 법인에 대하여 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환불해야 될 지분에서 상계할 수 있다.

③ 지분의 환불은 당해 회계연도 말에 한다.

## 제 4 장 임 원

**제26조(임원의 수)**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대표이사 1인
2. 이사 6인 이상
3. 감사 1인 이상

**제27조(임원의 선출)** 임원은 총회의 의결로 조합원 중에서 선출한다.

**제28조(임원의 임무)** ① 대표이사는 조직을 대표하고, 조직의 각종 회의의 의장이 되며, 조직의 업무를 총괄하고, 조직의 경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감사는 회계연도마다 법인의 재산과 업무집행 상황을 1회 이상 감사하여 그 결과를 총회 및 대표이사에게 보고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서 미리 정한 순서에 따라 대표이사 유고시 그 직무를 대리하고, 궐위된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9조(임원의 책임)** ① 임원은 법령에 의한 행정기관의 처분과 정관규정 사업지침 및 총회와 이사회 의결사항을 준수하고 법을 위하여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 하여야 한다.

② 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태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인이 다른 사람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단독 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③ 이사는 이사회가 미리 정한 순서에 따라 대표이사 유고시 그 직무를 대리하고, 궐위 된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제2항 내지 제3항의 구상권의 행사는, 이사회에 대하여는 대표이사가, 대표이사와 이사에 대하여는 감사가, 임원전원에 대하여는 조합원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은 조합원 대표가 이를 행한다.

**제30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 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만료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③ 보궐선거에 의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31조(임원의 해임)** 조직원이 임원을 해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서면동의를 얻어 총회의 의결로 해임한다.

**제32조(임원의 보수)** 임원에 대한 보수는 지급하지 아니하며, 여비 등 필요한 경비는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제33조(이사회)** ① 이사회는 대표이사와 이사로 구성하며, 대표이사가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이사 3인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구성원 과분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4조(이사회 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조직원의 자격심사 및 가입 승낙
2. 총회의 소집과 총회에 부의할 안건
3.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의 의결
4. 단체표장의 관리, 해당 상품의 사용실태·품질조사 및 사후조치 개선 등에 관한 사항
5. 기타 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35조(이사회 의 의사록)**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의 진행 및 그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이사가 기명날인 후 보관한다.

**제36조(자문위원)** ① 조직은 조직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군수, ○○군의회의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출장소장, ○○군농업기술센터소장 및 난지과수시험장 ○○시험지소장, 농협중앙회 ○○군지부장 등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자문위원은 대표이사의 자문에 응하며, 총회에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③ 자문위원에게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 5 장 회의의 운영

**제37조(총회)** ① 총회는 조직원으로 구성하며, 대표이사가 의장이 된다.

②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이를 구분한다.

**제38조(총회의 소집)** ①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대표이사가 이를 소집한다. 이 경우에 총회의 소집통지는 총회소집 7일 전 까지 회의내용과 회의 자료를 서면으로 조직원에게 통지한다.

② 임시총회는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을 청구한 때, 조직원 2분의 1이상이 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그 날부터 7일 이내에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제39조(총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규정의 제정 및 개정
3. 사업계획·수지예산의 책정·변경 및 결산의 승인
4. 조직원의 제명
5. 임원의 선출과 해임
6. 단체표장 해당 상품에 관한 사항
7. 이사회가 의결하여 부의한 사항
8. 잉여금 처분 및 결손금 처리
9. 해산
10. 기타 대표이사가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0조(총회의 개의와 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조직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조직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한다. 다만, 임원의 선출은 다수결로 한다.

② 의장은 총회의 의결에 참여한다.

**제41조(총회의 특별의결)**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에서 조직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
2. 임원의 해임
3. 조직원의 제명
4. 해산

**제42조(대의원회)** ① 조직인은 제40조 각호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둔다.

② 대의원회는 각 읍 면에서 선출된 대표로 구성하며 대표이사가 그 의장이 된다.

③ 대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43조(의결권의 대리)** ① 조직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② 대리인은 동일세대에 속하는 성년이어야 한다.

③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위임장을 회의시작 전까지 법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4조(의사록 작성)** ①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진행사항 및 그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여 보관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장과 총회에서 선출한 3인 이상의 조직원이 기명날인한다.

**제45조(회의내용 공고)** 총회의 의결사항은 제5조의 공고방법에 의하여 공고한다.

## 제 6 장 회 계

**제46조(회계연도)** 법인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

**제47조(사업계획 수립 및 결산)** ① 대표이사는 매 회계연도 시작 후 3월 이내에 당해 연도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를 수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대표이사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당해연도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제29조 제2항에 따라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정기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8조(운영경비)** ① 조직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조직원이 납입한 제 경비 및 제부담금, 찬조금, 보조금, 기타 제 수입으로 한다.

② 조직의 제 경비는 제1항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49조(자금관리)** 조직의 여유자금은 농업협동조합에 예치하여야 한다.

**제50조(경리공개)** 조직의 모든 장부는 사무소에 비치하여 항상 조직원에게 공개한다.

**제51조(수익배분 순위)** 조직의 총수입은 다음 각 호의 순서로 배분한다.

1. 제세공과금
2. 생산자재비, 임차료, 고용 노임 및 생산부대비용
3. 자산설비에 대한 감가상각
4. 이월결손금 보전

**제52조(잉여금의 처분)** ① 조직의 결산 결과 발생된 매 회계연도의 잉여금은 법정 적립금과 사업준비금을 빼고 나머지가 있을 때에는 이를 조직원에게 배당한다.

② 제1항의 배당은 배당할 잉여금의 총액을 전 조직원의 출자지분의 비율에 따라 한다.

**제53조 (손실금 처리)** 조직인의 결산 결과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사업 준비금으로 보전하고, 사업 준비금으로도 부족할 때에는 법정적립금·자본 적립금·회전출자금의 순서로 보전하며, 적립금으로도 부족할 때에는 다음 연도로 이월한다.

## 제 7 장 단체표장의 사용

**제54조(단체표장을 사용하는 자)** 상표법에 의해 등록된 단체표장은 소속 단체 회원만이 사용할 수 있으며, 법인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단체표장을 사용하는 자가 동 단체표장의 사용 시 따라야 할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 등에 대한 사용조건을 정할 수 있다.

## 제 8 장 사무국

**제55조(사무국 등)** ① 조직의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조직의 사무소에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는 국장과 약간 명의 직원을 두며, 필요시 단체 조합원의 직원에게 업무를 위촉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③ 사무국장은 회원 중에서 대표이사가 임명하며, 이사회 의 동의를 얻는다.

④ 직원은 대표이사가 임명하고 이사회 의 동의를 얻는다.



**제56조(서류비치 의무)** 대표이사는 정관 및 제 규정과 조합원명부, 재산 목록, 총회·이사회·자문위원회의 의사록 및 회계장부와 지리적특산품 관련 서류를 사무국에 비치하고, 조직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열람에 응하여야 한다.

## 제 9 장 해 산

**제57조(해산)** 조직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산된다.

1. 총회에서 해산을 의결한 경우
2. 파산한 경우
3. 조직원이 5인 미만이 된 후 1년 이내에 5인 이상이 되지 아니한 경우

**제58조(청산인)** 조직이 해산하는 경우에는 파산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산인은 대표이사가 된다. 다만, 총회에서 조직원 중 1인 이상의 청산인을 선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9조(청산인의 직무)** 청산인은 지체 없이 조직의 재산상황을 조사하고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재산처분의 방법을 정한 후 이를 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0조(청산 재산의 처리)** 조직을 해산하는 경우에 조직의 채무를 환제하고도 남은 재산이 있을 때에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지분의 비율에 따라 이를 조직원에게 분배한다.

부 칙

이 정관은 창립총회의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하며, 발기인이 기명날인한다.

○○○○. ○○ .

발기인 : ○ ○ ○      ①인

주민번호:

주소:

발기인 : ○ ○ ○      ①인

주민번호 :

주소 :

발기인 : ○ ○ ○      ①인

주민번호 :

주소 :

발기인 : ○ ○ ○      ①인

주민번호 :

주소 :

발기인 : ○ ○ ○      ①인

주민번호 :

주소 :

■ 유자차 원료공급 계약서(예시)

계열화 수출사업 ○○유자차  
원료공급 계약서

“갑”(수출업체)      주 소: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대표자:

“을”(생산자단체 또는 농가)      주 소:  
                                 성 명:  
                                 상 호:  
                                 주민번호 또는 사업자 등록번호:  
                                 전화번호:

“을”(연대보증인)      주 소:  
                                 성 명: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갑”과 “을” 간에 상거래에 대한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원료 공급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다. 단, “을”이 농가 개인일 경우 연대보증인을 설정하여야 한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갑”이 “을”에게 원료공급 계약을 함에 있어 “갑” “을” 쌍방 간의 준수사항을 약정함이며 상호 이익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계약기간)** 본 계약기간은 0000년 00월 00일부터 0000년 00월 00일 까지 1년으로 하되 “갑” 과 “을” 쌍방이 사전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제3조 (원료공급 품목 및 수량, 단가, 기한)**

1. 본계약을 함에 있어 원료공급 품목은 다음과 같다.

품목	단위(kg)	운반용기	품질규격	비고
유자원과	18kg	플라스틱 상자	상품이상	품질규격별도
공급단가	원/kg			최고공급가액

※ 기타 추가품목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하여 추가할 수 있다.

※ 농산물인 관계로 추후 급격한 가격변동이 있을 시에는 상호 협의하여 가격을 재협의 할 수 있다.

2. 계약 공급 수량은 유자 원과( )톤을 1차로 계약하여 추가공급분에 한해서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중품이하(과지포함)에 대해서는 별도로 매입할 수 있다.

(단“을”이 취급한 유자 원과의 1차 지명권은 “갑”에게 있으며, “갑”의 사전 동의 없이는 취급물품의 반출을 일절 금하며, 이의 위반시 계약파기로 간주한다.)

3. 물품의 공급가격에 있어 매년 상호 협의하여 가격을 정하되, 모든 부분에 대해 절약을 하여 상호 경쟁력을 높이는데 최대한 협조한다.

4. 유자 원과의 공급은 “갑”의 요청시 원활하게 공급하여야하며, 계약물량은 어떠한 경우라도 당해 연도 12월말까지는 공급 종료하여야 한다.

이의 위반시는 계약파기로 간주한다.

**제4조 (대금결제 및 지급방법)** “갑”은 원료공급에 대하여 “을”의 요청시 전도금을 사전에 협의 후 지급할 수 있으며, 잔여 대금은 물품입고 후 정산하여 현금 또는 이에 준하는 현물을 상호간에 지급절차에 준하여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전도금 지급기일: 일금 0000원정을 0000년 00월 00일까지 지불함.
2. 대금 총액 지급 기일: 물품 입고완료시 정산하여 15일내에 지급한다.

**제5조 (전도금 지급에 대한 보증)** “을”은 “갑”에서 지급받은 전도금에 대해서 그에 상응하는 공인보증서 및 보증인을 현금대신으로 영수하여야 한다.

**제6조 (물품공급영수증)** “을”은 “갑”의 원료공급에 있어 이의 증빙자료를 작업 종료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제품인수 및 운송부담)** 원료공급은 을이 기 물건을 수확하여 상차 후 가공장 도착을 원칙으로 한다.(단, “을”의 부담으로 “갑”이 지정 장소에 입고도 가능함.)

**제8조 (품질관리사항)**

1. “을”은 작업에 용이한 부패과를 뺀 정상적인 유자 원과 상품이상을 정선하여 당일 작업된 원료를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비상품과는 별도 관리하여 당일 입고한다.
3. 공급과잉으로 당일 처리가 불가능할 시에는 냉장보관을 하여야 한다.
4. “을”은 품질관리에 대하여 갑의 지정 및 협조사항에 우선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5. “을”은 유자공급에 있어 품질안정을 위하여 철저한 작업관리 감독을 시행하여야 하며, “갑”의 전도금으로 계약된 원료에 대해서는 “을”의 책임 하에 철저한 사후 관리를 시행하여 양질의 원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농약관리에 대한 사전 이력제 관리를 위하여 홍보, 관리 감독을 하며 수확시 그 이력을 제출한다.

6. 운송방법은 “갑”의 지정에 협조한다.

**제9조 (시설관리)** 본 계약에 따른 시설물의 관리는 “을”의 책임 하에 관리를 하여야 하며, 작업 시 발생하는 부산물은 “을”이 적정한 방법에 의하여 자체 처리하여야 한다.

**제10조 (계약내용의 변경)** “갑”과 “을” 상호간의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하여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11조 (계약해지)** “갑”은 “을”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때 본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갑”과 “을”이 본 계약내용을 위반 했을 때.
2. “갑”과 “을” 상호간의 신용불량으로 인하여 거래를 계속 유지하기가 곤란 할 때.
3. 계약된 원과의 사후관리를 상관례 상 충분히 하지 못하여 “갑”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4. 당해 연도에 “갑”, “을” 상호간의 협의에 의해서 이뤄진 계약은 파기할 수 없으며, 이의 위반시는 계약파기로 간주한다.

(단 “갑”이 인정 시에만 계약해지가 가능하며, 피해발생시 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12조 (계약 위반시)**

갑과 을은 본 계약조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만일 본 계약조항을 갑이 위반했을 때 갑은 계약금을 무효로 하고 을이 위반했을 때 을은 계약금의 배액을 갑에게 배상해야 한다.

**제13조 (계약이외의 사항)**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상관례에 준한다.

**제14조 (손해배상)** 본 계약상의 각 조 및 협의사항 중 “갑”, “을” 간에 위약 사항이 발생하여 쌍방 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본 계약이 해약되었을 경우 “갑”과 “을”은 상대방에 미치는 손해에 대하여 공급계약내용의 배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제15조 (기밀유지)** “갑”과 “을”은 본 계약기간 중 또는 계약해지 후에도 작업 공정 및 본 업무에 대한 기밀을 어떠한 경우라도 상호보안, 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상대방에 대하여 엄중히 항의할 수 있으며, 피해가 발생 시 변상을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 (책임한계)** 비정상적인 관리사항으로 인하여 입고된 유자 원과에 대해서는 물품 공급계약의 원칙에 따라 모든 책임을 위탁자인 “을”이 진다. 단 상호 협의 하에 이루어진 상황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있다.

**제17조 (조문해석 및 보관)**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상관례에 준하며 소송관할은 “갑”의 관할지방법원으로 한다. 그리고 후일을 증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 서명 날인 후 각 1통씩 보관한다.

0000년 00월 00일

■ 유자차 납품 계약서 (예시)

## 거래기본 계약서

(갑) ○○○○ (수입국 수입업체)

(을) ○○○○ (유자차 수출업체)

○○○○(이하 갑이라 함)은 ○○○○(이하 을이라 함)로부터 제품을 구매하는 바, 이와 관련하여 갑과 을은 다음과 같이 제품거래에 관한 거래기본 계약(이하 본 계약이라 함)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본 계약 및 본 계약에 기초한 개별계약에 따른 갑과 을 상호간의 의무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본 계약 및 개별계약>**

- ① 갑과 을은 본 계약에 기초하여 개개의 거래에 관한 세부적 거래조건을 정하기 위하여 개별계약(이하 개별계약이라 함)을 체결한다.
- ② 개별계약은 갑이 구체적인 거래조건이 명시된 발주서(전산발주서 포함)를 을에게 교부 또는 전송함으로써 성립한다. 다만, 수량 이외의 조건에 관하여 갑이 본 계약과 다른 조건으로 발주서를 교부 또는 전송했지만 을이 수용하기 어려운 조항이 있을 경우 을은 동 발주서 수령일로부터 ( )일 이내에 거절의 의사를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갑에게 통지하여 개별계약의 체결을 거절할 수 있다.
- ③ 개별계약은 본 계약의 일부를 구성하되, 개별계약에서 따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본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르기로 하고 개별계약에 정한 사항과 본 공급계약에 정한 사항 사이에 차이가 있을 때에는 그 상충하는 부분에 한하여 개별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르기로 한다.

**제3조 <제품>**

본 계약에 따라 을은 갑에게 아래의 물품(이하 제품이라 함)을 공급하고 갑은 제품을 을로부터 구매한다.

제품: 유자차 등

규격: 개별계약에 명시

제품일자: 제품인도일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제조된 제품

**제4조 <주문 및 매매대금의 결제조건>**

① 개별계약에 의한 내용에 근거하여 갑은 을을 수혜자로 하는 취소 불능 일람불 신용장 등으로 거래하고, 을에게 통지된 시점을 발주 및 주문접수 확정으로 한다. 내지는 갑이 한국의 현지법인을 통해 을에게 지정된 계좌 및 날짜에 상품대금을 입금한다.

**제5조 <제품 표시사항>**

① 을은 갑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제품의 포장에 갑 전용의 라벨을 부착 또는 표기사항을 기입해야 한다.

**제6조 <제품 인도조건>**

① 을은 갑이 지정한 부산항의 CY(Container Yard) 또는 CFS(Container Freight Station)에서 갑에게 제품을 인도한다. 내지는 갑의 요청에 의해 C.I.F. 일본항으로 상품을 인도한다.

② 을은 갑의 발주서에서 정한 기일 내에 제1항 소정의 장소에서 갑에게 제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③ 갑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제1항 소정의 인도장소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을이 추가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 하여 정산하기로 한다.

**제7조 <제품의 하자로 인한 소비자 피해에 대한 책임>**

① 해외의 소비자로부터 이물질, 균 등의 제품의 하자를 원인으로 한 분쟁이 제기된 경우 을은 을의 책임과 비용으로 그 일체를 처리, 해결하고 갑 및 갑의 임직원, 피용인, 대리인 등을 면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유로 인하여 갑이 해외 행정당국으로부터 불이익한 처분을 받거나, 해외의 소비자에게 손해를 배상하거나 기타 분쟁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는 경우, 을은 이로 인하여 발생한 갑의 모든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③ 을은 제품의 하자가 없음 또는 유통과정에서의 변질되었음을 이유로 하여 본조 소정의 책임에 대한 면책을 주장하지 못한다. 다만, 갑 또는 갑의 BUYER, 해외의 최종 소비자의 귀책사유가 있음을 을이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8조 <계약기간>**

본 공급계약의 유효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다만,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어느 일방이 상대방에게 서면에 의한 계약종료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한 동일한 조건으로 1년간 자동 연장된다.

#### **제9조 <계약의 해제, 해지>**

갑과 을 중 어느 일방 당사자가 본 계약을 위반 할 경우 타방 당사자는 위반 당사자의 계약위반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시정을 요구하고 서면의 도달 후 30일 이내에 위반사항이 시정이 되지 않으면 계약기간 중이라도 서면의 통지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제10조 <불가항력에 의한 면책>**

① 갑 또는 을은 전쟁, 혁명, 폭동, 천재지변, 또는 정부의 조치 등의 불가항력에 의한 사유로 계약조건의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지연되는 경우 상대방에 대하여 그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② 제1항의 불가항력에 의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에 의한 이행 불능의 당사자는 타방 당사자에게 그 발생사실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고, 진전 상황을 계속적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또한 불가항력에 의한 사유가 해소되면 지체 없이 해소사실을 통보하고 신속히 계약 상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갑 또는 을이 본 계약을 위반할 경우, 위반 당사자는 상대 당사자에게 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2조 <분쟁의 해결>**

① 본 계약에 관련된 당사자 간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신의와 성실에 따라 쌍방이 협의하여 해결하기로 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대한상사 중재원을 전속적 배타적 합의 관할로 하는 소송으로 해결한다.

갑과 을은 이상과 같이 합의한다.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기명, 날인하여 각 1부씩 보관하기로 한다.

○○○○년 ○○월 ○○일

수입업체명:

대표이사: (인)

주소:

전화번호:

수출업체명:

대표이사: (인)

주소:

전화번호

## ■ 유자차 품위 기준 (예시)

-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유자차는 국내에는 일부만이 소비되고 생산량의 대부분이 일본으로 수출됨.
  - 최근 대일 수출량이 빠르게 증가
  - 전남지방 유자재배농가의 소득원으로서 확고한 자리매김
  - 유자차의 품위규격에 따른 품질평가와 품위규격은 우리나라 유자차의 상품 가치 즉 국제 경쟁력을 좌우
  - 그러므로 유자차의 품질 평가 및 품위규격은 차별화 요소로서 매우 중요
- 유자의 품질평가(선별)의 중요성
  - 객관적인 유자 원과의 품질평가는 유자차의 품질을 등급화·균일화시켜 상품성을 향상
    - 가격 및 가치를 결정
    - 품질 대비 가격에 대한 생산자, 소비자 및 유통업자 간의 분쟁을 방지
  - 품질평가를 통해 수확된 유자의 용도가 결정
    - 수출용(브랜드), 내수판매용, 가공용, 기타 등
  - 품질평가 자료는 농장별 품질차이를 구분하므로 개개 농가 재배기술 향상에 기여
    - 저품질 생산자가 고품질 생산자의 상품과 품질비교를 통해 저품질 생산에 대한 원인조사 및 해결 대책 마련 등 생산기술 향상을 위한 척도로 이용
- 수확직후 유자의 품질지표
  - 상품으로서의 최초 품질은 외관 판정(첫인상)에 의해 크게 좌우
  - 수확직후에는 외관적 요인 즉 모양, 크기, 색깔, 그리고 물리적 상처나 병충에 의한 결점이 품질지표로 가장 중요
  - 수출 적합 유자차의 기준은 유자 원과의 잔류농약 안전성 기준에 준함

표 2-2. 유자 품질구성 요소별 품질지표

구성요소	품 질 지 표
외 관	크기, 모양, 착색, 광택, 결함(생리적, 물리적, 병리적) 등
조직감	단단함(경도), 연함(물러짐) 등, 유포 발달 정도
풍 미	단맛, 매운맛, 신맛, 짠맛, 쓴맛, 향, 이취 등
영 양	비타민, 무기성분, 기능성성분, 탄수화물, 단백질, 지질 등
안전성	독성물질, 잔류농약, 미생물 오염 등

## &lt;기본 원칙&gt;

- 대상 품종: 남해1호, 다정, 원향 동일 적용
- 품위 구분: 특품, 상품, 등외품(유자즙 용)으로 구분
- 상품 이상은 유자차 원료로, 등외품은 유자즙 생산에 이용

표 2-3. 유자 품위기준

구분	특품	상품	등외품(유자즙 용)
색택	푸른기가 없고 밝고 맑은 품종 고유의 색택 (진한노란색), 광택	최우수 대비 70% 정도 이상의 것	최우수 대비 70% 정도 이하의 것
숙도	완숙과 대비 90%	좌동	완숙과 또는 미숙과
모양	좌우 대칭 원형	최우수 대비 70% 이상의 것	최우수 대비 70% 이하의 것
흠집정도	과피에 상처나 변색이 없는 것	최우수 대비 70% 정도 이상의 것	최우수 대비 70% 정도 이하의 것
수축현상	과피가 마르지 않은 것	좌동	좌동
조직감	유포 발달된 것	좌동	좌동
향	향이 좋은 것	최우수 대비 70% 이상의 것	최우수 대비 70% 이하의 것

- 계열화 수출전문조직 브랜드의 유자차 품질지표
  - 계열화 수출전문조직의 유자차는 우리나라 공동 대표 브랜드로서 가장 좋은 품질의 유자차를 의미.
  - 계열화 수출전문조직에서 생산하는 유자차는 우리나라에서 생산한 유자로 만든 유자가공식품으로서 모양 및 크기, 설택, 그리고 물리적 상처나 변질 등의 결점이 없고 포장단위별 품질이 균일하며 신선한 최상의 품질을 겸비한 것
  - 유통 및 소비단계에서의 품질지표: 신선도, 안전성이 가장 중요

표 2-4. 계열화 수출전문조직에서 생산하는 유자차의 품질규격(예시)

구분	일반 품질기준	강화된 품질기준
농약	일반재배 농약검사(220품목)	유기농친환경재배
원료검사 (이물질)	원료, 가공공장에서 2차례 세척 후 절단 씨 제거→이물질건사(유자 씨 포함)→배합	1차 가공에서 입고된 원료를 유자차 생산시 Clean room에서 이물질 2차 선별(유자 씨 파편까지 제거)
color	3톤 배합탱크에서 동시 살균 (살균온도가 고온이므로 유자 고유의 color<황금색>가 갈변)	3톤 배합탱크에서 배합만 하고 소형 살균 탱크(40kg)로 이송. 짧은 시간에 살균하므로 갈변 지연
원료배합	1. 유자 절입시 설택 첨가 2. 벌꿀→한국양봉협회인증	무설탕 유자원료 사용(선진국 선호)
포장	병 제품(살균 및 진공 용이) 일회용 T/B	Spout Pouch (국내 최초개발-5월 출시예정) 장점: 파손우려 無, 보관용이, 분리배 출 용이, 운반용이, 업소용으로 적합, 사용시 간편(별도 스푼 불필요)

## 제 3 장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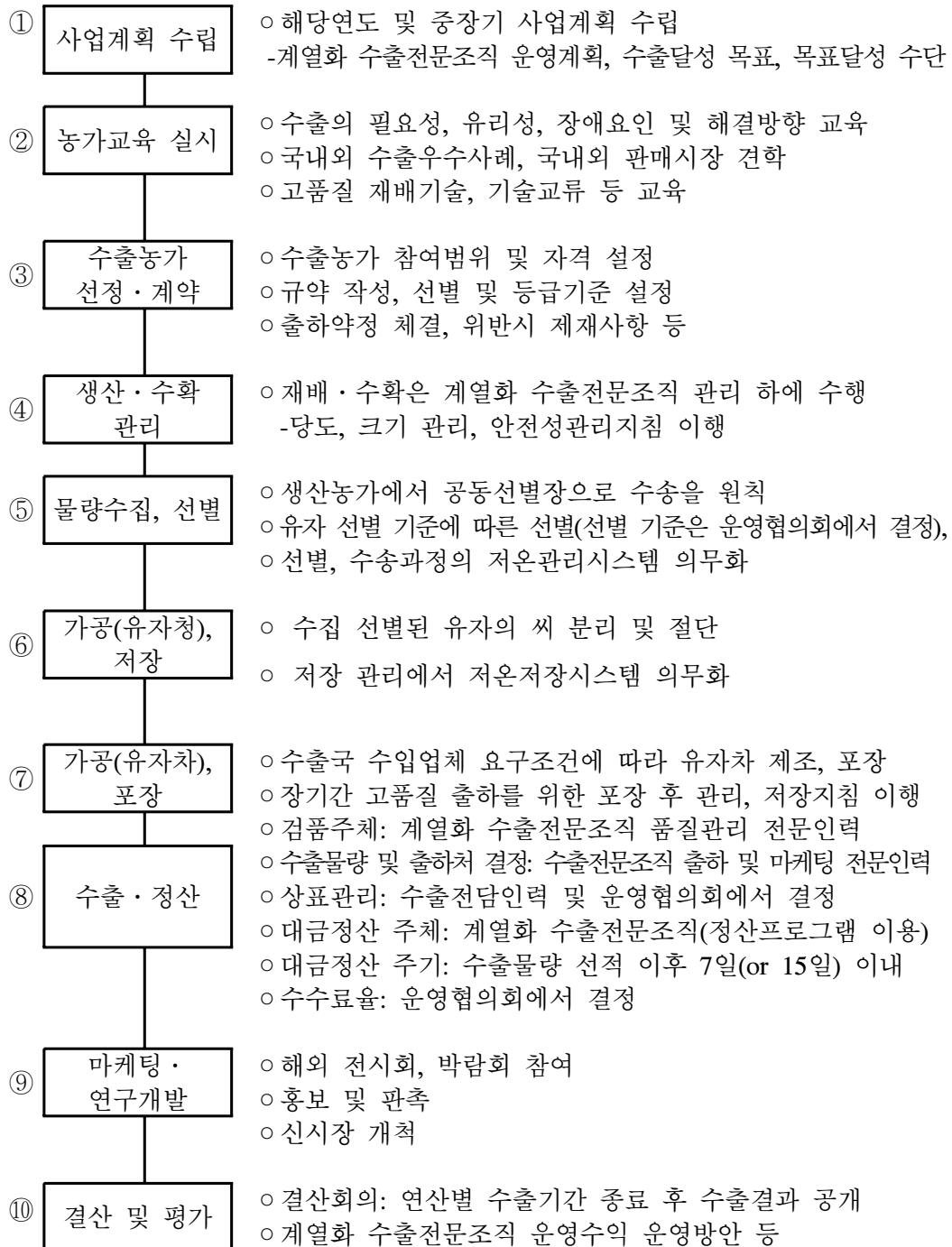
### 수출전문조직 사업 절차별 추진방안

#### 1. 사업 추진절차

- 계열화조직 수출사업을 추진하는 절차를 간략히 정리하면 <그림 3-1>과 같음.
  - ① 사업계획 수립(계열화조직 수출사업 준비 단계).
  - ② 농가교육 실시
  - ③ 수출농가 선정 및 계약(사업의 구체적 실행단계)
  - ④ 생산 및 수확 관리
  - ⑤ 물량수집과 선별
  - ⑥ 유자청 가공, 저장 과정
  - ⑦ 유자차 가공, 포장
  - ⑧ 실제 수출과정과 정산
  - ⑨ 마케팅 및 연구개발
  - ⑩ 연간사업 결산 및 평가 단계를 거침



그림 3-1. 계열화조직 수출사업 추진 절차도



## 2. 절차별 추진방법

### 2.1. 사업계획 수립

- 계열화조직 수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업계획이 수립되어야 함.
  - 사업계획서는 단기(1년), 중기(5년), 장기(10년)로 해당연도 계획뿐만 아니라 중장기 기간에 대해서도 단계별 추진계획을 세워야 함
  - 사업계획서 내용에는 계열화 수출전문조직의 운영계획과 함께 수출사업 여건 및 사업성 분석, 수출사업 목표 설정, 수출목표 달성수단, 목표 실현 가능성을 검토하여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함
  - 계열화 수출전문조직의 기반을 강화시키고 수출물량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다음 항목들에 대해서 단기, 중기, 장기 목표를 설정해야 함
    - 계약재배 계약내용 이행 비율
    - 수출물량 공급과 내수 출하비율
    - 품질관리 시스템 개선 및 적용 비율: ERP, GAP, 이력추적시스템 등
    - 수출가격 결정구조: 가격교섭력 우위 향상(상, 중, 하)
    - 농가-수출전문조직 연계구조: 결속력 수준
    - 유통시설 및 수출수행 가동률 등: 연간 가동 일수
    - 수출창구 일원화
    - 수출브랜드 일원화 및 비중

### 2.2. 농가교육 실시

- 계열화조직 수출사업의 정착 및 활성화를 위해서는 농가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요구됨. 수출전문조직 주체는 농가가 수출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이 필요함.

- 농가교육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수출전문조직과 생산자간의 신뢰관계를 구축하고 유지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임
  - 교육도 단계적으로 시행되어야 함. 사업시행 초기와 생산 및 수확과정, 출하 단계, 사업평가 단계별로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함
- 사업초기 교육내용
    - 사업시행 초기에는 시장개방 확대, 수출의 당위성과 필요성, 수출의 유리성 등을 교육시켜야 함. 그리고 계열화 조직의 수출사업 과정 및 단계별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과 애로사항을 제시하고 해결방향을 제시해야 함
    - 농가들의 수출사업 참여 비율을 높이고 계약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내용도 교육목적에 포함되어야 함
- 고품질 유자 생산 재배기술 및 기술교류 교육
    - 유자 재배, 생산 및 수확시기에는 당도를 높이고 안전성을 높일 수 있는 고품질 유자 생산기술 중심으로 교육하는 것이 필요
    - 유자 재배과원 선정, 품종 및 묘목선택, 과원 조성방법, 환경을 고려한 시비와 토양관리, 전정 및 수체관리, 적정 결실관리, 생리장해, 병해충관리, 수확 후 관리 등의 교육내용 필요
    - 특히 생산농가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를 원활히 문의하고 교육할 수 있도록 생산기술 지도전문가가 현장밀착형으로 교육 및 상담, 지도할 수 있어야 함. 생산지도는 조직의 소속감과 결속력을 강화시키는 강력한 수단임
- 현장견학, 우수사례 견학 교육
    - 국내외 계열화 우수사례를 견학함으로써 계열화 수출전문조직의 필요성과 유리성을 인식하고 공감할 수 있어야 함
    - 또한, 소비자 위주로 변해가고 있는 시장, 수입농산물의 상품화와 홍보 활동 등을 파악하기 위해 대도시 견학을 수행할 필요가 있음. 국내산 유자가 해외 시장에서 어떻게 경쟁력을 높여야 하는 지를 인식할 수 있어야 함

- 교육과정 이후에는 서로 토의하는 시간을 마련해야 함. 수출의 필요성과 유리성을 인식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로 삼음. 농가별 기술교류의 기회가 될 수 있음.

### 2.3. 수출농가 선정 · 계약

- 계열화 수출전문조직의 참여 농가 선정 방안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음.
  - 기존에 결성된 조직에 가입된 농가가 수출전문조직에 참여하는 방안과 신규 농가가 계열화 수출전문조직에 가입하는 방안임
  - 현재 유자 수출이 비교적 잘 이루어지는 조직의 형태는 기존에 생산 농가들이 농업협동조합 작목반이나 영농조합 법인에 가입되어 있는 형태임. 계열화 수출전문조직의 가입농가 선정은 이미 기존 조직에 가입되어 활동하고 있는 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함
- 수출사업 참여농가는 수출전문조직의 수출 계획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따르는 농가들로 구성되는 것이 바람직함.
  - 참여농가는 생산여건이 비슷한 농가를 대상으로 해야 결속력과 운영을 강화시킬 수 있음. 재배지역, 생산규모, 재배 품종, 재배방법 등
  - 재배 과정의 기술적 문제 해결과 품질이 우수한 유자 생산을 위해서 생산 과정에서 품질을 향상시키는 기술지도 능력이 뛰어난 전문 인력과 수출사업 마케팅 활동에 적극적인 인력이 있는 조직에 소속된 농가들로 구성
- 계약 작성
  - 기존의 조직들이 대부분 「약관(또는 정관)」, 「선별 및 등급판정에 관한 규정」이 있으므로 당해 연도 출하약정만 하면 될 것임. 유자는 재배면적과 생산량이 매년 비슷하므로 매년 출하약정을 할 필요가 없이 농가당 총

생산량의 〇%를 출하하는 것으로 약정할 수 있음

- 생산농가는 계열화업체와의 계약사항을 충실히 이행해야 함
  
- 규약에 포함되는 내용
  - 유자 수출 우수업체는 수출유자의 계약조건을 대부분 수출단지의 농협이나 영농조합과의 유자 원과 공급계약이 이루어지고 있음. 따라서 농가와 의 계약서뿐만 아니라 농협 및 영농조합과의 수출 유자 공급계약도 맺어져야 함
  - 계열화 수출사업 농가 규약에 포함되는 내용은 사업의 목적, 사업 명칭, 사업 내용 및 범위, 운영협의회 설치, 운영협의회 회의 소집과 역할, 수출 전문조직의 설치 및 운영, 회원농가의 자격, 회원의 의무, 탈퇴 및 제명, 재원조달, 재정운영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함
  
- 선별 및 등급의 품위기준에 관한 규정
  - 품위 기준에 대한 기본 원칙으로는 수출대상 품종(00유자, 00유자), 품위구분 (수출합격품, 수출불합격품, 유자즙가공용) 등
  - 품위기준에 포함되는 항목은 색택, 속도, 모양, 흠집정도, 수축현상 등 외관에 의해 구분
  - 특히 유자 선별과 등급 기준은 매년 기후여건에 따라 변동될 가능성이 크며 탄력적으로 조정해야 되는 경우가 많음
  - 선별 및 등급의 품위기준은 자주 변경되지 않은 것이 바람직함. 만약에 등급 기준을 조정해야 될 경우에는 수출전문조직 운영주체와 생산농가들로 구성된 운영협의회에서 결정되는 결과에 따르는 것이 바람직함
  - 유자차의 품위규격에 따른 품질평가와 품위규격은 우리나라 유자차의 상품 가치 즉 국제 경쟁력을 좌우함. 그러므로 유자차의 품질 평가 및 품위규격은 차별화 요소로서 매우 중요
  
- 수확직후 유자의 품질지표
  - 상품으로서의 최초 품질은 외관 판정(첫인상)에 의해 크게 좌우
  - 수확직후에는 외관적 요인 즉 모양, 크기, 색깔, 그리고 물리적 상처나 병충

- 에 의한 결점이 품질지표로 가장 중요
- 수출 적합 유자차의 기준은 유자 원과의 잔류농약 안전성 기준에 준함
- 계열화 수출전문조직 브랜드의 유자차 품질지표
  - 계열화 수출전문조직의 유자차는 우리나라 공동 대표 브랜드로서 가장 좋은 품질의 유자차를 의미
  - 계열화 수출전문조직에서 생산하는 유자차는 우리나라에서 생산한 유자로 만든 유자가공식품으로서 모양 및 크기, 선택, 그리고 물리적 상처나 변질 등의 결점이 없고 포장단위별 품질이 균일하며 신선한 최상의 품질을 겸비한 것
  - 유통 및 소비단계에서의 품질지표: 신선도, 안전성이 가장 중요

## 2.4. 생산, 수확 관리

### 가. 생산단계별 관리

- 유자 생육관리
  - 유자 원과를 생산하는 농가부터 생육 단계별 중점 관리기술을 적용하여 고품질 유자를 생산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어야 함
  - 생육 단계별 식물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재배지의 지상부 및 지하부 환경, 작물 관리방법 등의 체계화로 비상품과의 발생량을 줄이고 고품질의 유자를 생산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단계임
- 유자 생육관리를 위한 기본 숙지사항
  - 첫째, 재배 기간이 길어서 식물체가 스트레스를 받아 활력 저하 및 기형과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광, 온도, 습도, 일사량, 탄산가스, 양액농도(급액) 및 폐액량 등 모든 환경조건 조절과 작물의 상태를 파악하여 생육의 균형을

유지해야 함

- 둘째로 바이러스의 감염 경로를 사전에 예방하고 육묘, 전지 및 수확 작업 중에 감염 또는 전염되지 않도록 하며 전염된 묘나 식물체는 제거해야 함. 제거 시 다른 주에 감염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
- 세 번째 필요하다면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작물 관리를 위하여 인지도가 높은 전문 컨설턴트의 지도를 받는 것이 좋음. 여러 사람의 얘기를 듣고 임의로 판단하거나 따라하는 일은 삼가야 함

○ 영농계획 수립

- 유자 생산에는 생산농가의 재배면적과 품종이 어느 정도 결정된 상태임. 따라서 수출 유자 영농계획은 재배시기별 작업 일정, 방제 일정, 수확 일정 중심으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함
- 유자 생산목표 설정: 유자 생산의 목표는 안정된 수량 확보, 소비자가 선호할 정도의 당도 및 안전성이 갖추어진 고품질 유자 생산, 친환경적인 재배환경 조성을 고려해야 함

○ 재배지 선정과 품종 선택

- 수출 유자는 대부분 기존에 조성된 과원에서 생산되어 수출되고 있는 실정임
- 유자 과원 조성에 있어서 수출국에서 선호하는 품종의 유자를 생산하기 위해 신규로 과원을 조성한다면 특히, 수출국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유자 맛이나 안전성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유리한 과원인지를 판단해야 함
- 수출 유자 품종 생산에 적절한 토양과 기온조건이 충족되는 지대에 적정 규모로 조성되어야 함
- 재식시에는 적절한 재식방법, 재식거리를 고려되어야 함
- 수출 유자 품종은 수출국 소비자들의 기호, 수출시기, 경영조건 등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함

표 3-1. 유자 품종별 특성

품종	특징
남해 1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세 강하고, 가시가 많고 길며, 해거리가 적고 대과종, 과피가 두껍다.</li> <li>· 수량은 10a당 1,200kg 정도로 다수성</li> <li>· 내한성이 약하여 동해방지 대책이 필요</li> </ul>
남출(南出)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세가 특히 강하여 잎은 대형이고 짙은 녹색이며 가시도 길고 많다.</li> <li>· 해거리가 적고, 숙기는 11월 15일(남해기준)로 다소 늦으며 과실도 크다.</li> <li>· 과피가 특히 많으며 유포가 커서 향기도 많다.</li> <li>· 더닝이병에 다소 약하고 내한성도 약한 편이어서 분지 등 냉기 침체지역은 피하는 것이 좋다.</li> </ul>
다정(茶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예 연구소에서 남해군 삼동면에서 수집된 우량계통을 선발하여 1994년 명명된 계통</li> <li>· 남해 1호와 비슷한 특성</li> </ul>
원향(園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예연구소에서 거제시 사동면 고인돌 농장에서 수집된 계통 중에서 선발한 것으로 1995년 명명된 계통.</li> <li>· 남해 1호와 비슷한 특성</li> </ul>

자료: 한아름 유자농장 홈페이지 자료(www.친환경유자.kr)

#### ○ 기상재해 및 생리장해 관리

- 생리장해 요인들의 증상을 파악하고 방지할 수 있도록 관리가 이루어져야 함

표 3-2. 기상재해 및 생리장해 대책

항목	내용
동해	· 짚 싸주기: 지상 80~100cm 높이 · 신문지피복: 지체부 20~30cm 높이
가뭄	· 나무뿌리 주위에 퇴비, 짚, 풀 및 비닐 피복 · 방울물주기, · 생육 불량시 요소 0.3%액 엽면 살포
장마	· 명거 및 암거배수로 설치 · 토양유실방지
태풍	· 숙기가 된 과실은 5~7일 앞당겨 수확 · 피해과실 및 부러진 가지 정리
해거리 방지	· 50-70잎 당 1과 남김 · 가지유인, 환상박피, 뿌리단근 등
낙과	· 꿀벌방사 및 인공수분 · 가지유인, 전정으로 투광상태 양호하게 관리 · 질소와 칼리 균형시비

자료: 농촌진흥청. 주요작목영농순기표(행정간행물 31200-51763-67).



- 병해충관리
  - 병해충 관리의 원칙을 이해하고 병해충 발생의 예찰, 허용 및 인체에 덜 해로운 농약 이용, 내성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여 방제 및 관리가 이루어져야 함
  
- 수확
  - 수확은 유자의 착색정도에 따라 2~3회로 나누어 실시함
  - 일시에 수확하게 되면 수확시기가 늦은 유자는 과육(果肉)의 발육이 종료된 후에도 과피(果皮)가 성장되어 과육과 과피 사이에 공간이 생기는 부피과(浮皮果)의 발생이 많아짐. 그리고 과심부(果心部)에 열개(裂開) 및 공극이 생기는 것도 있음. 이러한 유자는 저장성이 매우 약함
  - 수확은 유자 표면에 이슬이 마르지 않은 이른 아침이나 비가 온 직후에는 피하는 것이 좋음
  
- 수확 후 관리
  - 수출용 유자에 적절한 조건으로 수확시기를 조절하고 예건, 저장을 할 수 있어야 함
  
- 가공장까지 운송 방법
  - 여름철 생산농가별로 수확 직후 예냉을 하거나 저온저장고에 입고하여 온도를 저하시킨 후 가공공장까지 냉장차를 이용하여 품온을 변화시키지 않는 상태로 운송해야 함

## 나. 품질 및 안전성 관리

- 계열화 수출전문조직 주도로 자체 품질관리기준을 마련
  - 자체 품질관리능력, 수출시장별 유통실태, 바이어가 요구하는 품질관리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기준을 마련
  - 품질관리 전문 인력 확보
- 계열화 수출전문조직 주도로 전 생산 농가를 대상으로 재배단계에서부터 안전성관리 지도
  - 농약안전사용기준 준수, 농약 공동구입과 공동방제, 농약사용 기록대장 비치, 수출 전 잔류농약검사 실시 등
  - 농약안전사용지도 전문 인력 확보
- GAP 인증을 위한 생산이력정보 기록
  - 과수원 기본현황: 토지 및 재배작목 현황, 관수 및 배수 방법, 재해예방 및 시설현황, 토양관리방법 현황, 재배유형, 보유 시설 및 농기계 현황
  - 생산이력 실천 영농일지: 주요 작업내역 및 소요인력, 재배관리, 생장단계 분석, 병해충예찰 및 방제, 관수, 비료주기, 토양관리, 생육관찰, 재해, 수확 및 선별 출하저장, 농자재구입, 교육모임, 일일영농일지

## 2.5. 물량수집 및 선별

- 수확한 유자는 생산농가가 직접 공동선별장으로 수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개별적으로 수송이 어려운 경우 산지수집센터에서 수집할 수도 있음.
  - 농가에서 수확한 물량은 전량 공동선별장으로 출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유자의 품위 기준은 운영협의회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름.
  - 출하 가격은 유자의 선택 및 흠집수준 등의 품위기준에 따라 달라짐. 예를

들어 일본 수출용 유자차 원료의 수매단가는 특품, 수출용 유자차는 상품, 수출용 유자즙 원료는 등외품 등 용도에 따라 달라짐

#### ○ 선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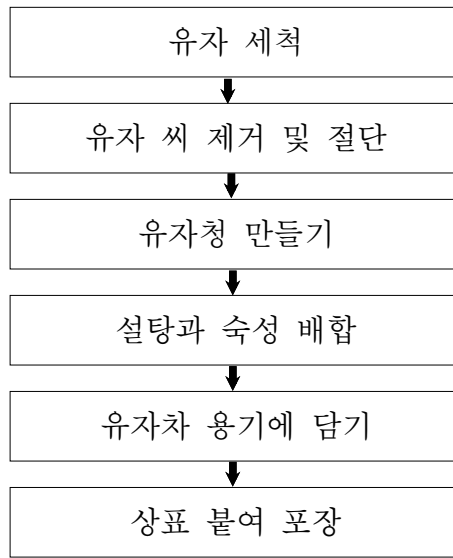
- 수확 및 선별작업은 면장갑을 끼고 실시하여 손톱에 의한 과실 껍질의 상처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함
- 고품질 유자차를 위해 유자선별요원은 엄격한 품위규격을 숙지 및 준수해야 함
- 조직의 주체는 선별요원의 교육 및 선별능력 검정을 통해 균일한 품질이 선별되도록 유도해야 함
- 현장의 선별요원 간에 선별한 유자를 상호비교 및 보완을 통해 품질 규격화 유도
- 공동선별 센터 현장에는 품위관리책임 전담요원을 상시 배치하여 품위규격 준수여부를 모니터링 해야 함
- 품위관리책임요원은 품질관리 매뉴얼을 사전 숙지해야 함
- 선별일자별로 품위관리현황을 기록하여 향후 품위관리의 기초 자료로 이용해야 함

## 2.6. 유자차 가공 및 포장단계

### 가. 세척 및 유자청 가공

- 가공장 필수 자동화 시설: 진공농축기, 세척기(브러쉬 장착), 배합기, 습식 분쇄기, 유자커터기, 분쇄기, 교반기, 충전기(진공포장), 유자 착즙기 등

그림 3-2. 가공장에서의 유자차 생산 공정



- 유자 세척하기
  - 유자 과실 표면은 감귤류보다 표면이 거침
  - 브러시가 필수 장착된 자동화 세척기를 이용하여 가공장에 도착한 유자를 세척함
  - 물기를 제거함
  
- 유자 씨 분리 및 제거
  - 유자는 과피가 연약하여 다른 과실보다 장기저장은 어려움
  - 가공장에 도착하여 세척한 유자는 우선 씨를 분리하여 제거함
  
- 유자청 만들기
  - 씨가 제거된 유자를 절단기를 이용하여 잘게 절단하여 유자청을 만듦

- 유자청 저장(貯藏)
  - 예냉, 예건, 선별, 저장 등 수확 후 관리의 특징
    - 11월~12월에 생산한 유자를 당절입(1차 가공)하여 다음 수확기까지 1년 간 냉장 보관함으로써 안정적으로 가공·생산 함
    - 예냉 후 콜드체인 시스템 구축 필요: 예냉으로 일단 유자차의 온도를 낮추면 그 온도에서 모든 유통이 행해져야 함. 만약 다시 온도가 높은 조건에 놓여 지게 되면 예냉 처리는 온도변화를 야기하는 원인으로 작용하여 품질을 저하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음

#### 나. 유자차 가공 및 포장(상품화 단계)

- 유자차 가공
  - 저장된 유자청을 분쇄
  - 수입국 소비자의 수요에 맞게 유자와 설탕 배합
    - \* 배합률(예) :유자 1kg, 벌꿀 또는 설탕 1kg
  - 규격 용기에 담아 밀봉
  - 저온저장시스템에서 저장 및 숙성
  
- 포장
  - 포장용기와 포장규격은 수출국에서 요구에 맞추어 조정하는 경우가 많음. 상표는 가급적 정부 기관에서 추진하는 공동브랜드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현재 수출전문조직에서 개별적으로 사용하는 브랜드도 공동브랜드로 통합 시키면서 브랜드 인지도 및 충성도를 높일 수 있어야 함(예 휘모리)
  - 상표관리는 운영협의회에서 결정 사항에 따름
  - 포장제에 표기되어야하는 내용은 상표와 함께, 식품에 의거 첨가물 및 배합 비율, 제조년월일, 유통기한, 원산지 등을 명시해야 함

## 2.7. 수출 및 정산

### 가. 수출물량 관리

- 계열화 업체는 생산농가 출하물량 중 안전성과 품질기준을 충족하는 계약 물량에 한해 수출토록 함.
  - 계약 외 물량은 안전성과 품질기준을 충족시키거나 보장하기가 용이하지 않음.
  - 수출규격 미달품에 한해 국내시장 출하 가능

### 나. 수출

- 수출을 위한 브랜드 유자차의 장기 유통(수송)기술
  - 선진화된 선별, 포장 및 수송 체계의 확립이 필요함
- 저온수송체계 및 단위 적재화
  - 콜드체인시스템(Cold chain system)
    - 수확에서부터 일본 소비자에게 도달하는 전 과정을 저온상태로 진행하는 유통시스템으로 예냉, 냉장수송, 냉장보관 및 냉장진열을 포함함
    - 장점: 신선도 저하에 의한 부패를 억제하여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수출 클레임 발생을 방지함
- 적재방법
  - 컨테이너 내부에 내용물이 움직이거나 손상 받지 않도록 공기유동을 막지 않는 자재를 이용하여 고정함
- 대일 수출을 위한 브랜드 유자차의 선박수송 시스템 운영 대책
  - 일반적인 대일 농산물 수출체계 문제점(온도 관리 미흡)
    - 냉장차 → 저온컨테이너 → 냉장차 등의 교체 수송시 외기노출에 의해 품질 저하가 발생함

- 여름철 온도변화는 그 횟수가 많을수록 신선도가 저하되고 부패를 초래함
- 브랜드 유자차 수출체계 개선 방안(유통온도 중점관리)
  - 기존 수출과정의 냉장차 및 컨테이너 교체수송을 적용가능한 모든 구간에 수출용 저온컨테이너로 일관 수송함
  - 효과: 수송 중 온도변화에 따른 선도저하 및 부패 발생이 최소화됨
    - 고품질 및 신선도 유지, 색변화 감소(수출 클레임 방지)
- 실제 저장 및 수출 과정 중 유자차 중점관리 기술
  - 온도관리: 효율적인 온도관리는 설정온도(8~10℃)를 기준하여 온도편차가 적어야 함
    - 온도편차가  $\pm 0.5^{\circ}\text{C}$ 를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조절되는 것이 바람직함.
  - 저장고 및 컨테이너 내부 위치별 온도분포 파악을 통해 송풍기 용량의 적합성 및 적재방식의 적절성을 점검해야 함
    - 온도에 기인하는 저온장해 및 동해 피해 발생 방지
    - ※ 빈번한 온도변화는 유자차의 품질손상에 치명적임
  - 기체축적 방지: 저장고 및 컨테이너 내부에 생리적 장해 발생 요인이 되는 탄산가스가 축적되지 않도록 환기나 제거기를 이용하여 적정 대기 환경을 유지해야 함
    - ※ 컨테이너 환기 조절창 이용 40~60% 환기 조절
  - 품질변화 예측을 위한 인디케이터 이용 방안
    - 유자차 품질별로 수송조건과 동일한 조건에서 모의 유통을 통해 유통 후 품질변화를 예측하여 클레임 발생 원인을 예측할 수 있음
    - ※ 수출과정 중 브랜드 유자차 자체 품질변화 예측
  - 장기 저장시에는 저장고 앞부분에 품질변화예측 인디케이터(품질이 변하기 쉬운 유자차)를 두어 전체 품질변화를 미리 파악하여 출하시기를 결정하여 저장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음
- 저장고 및 컨테이너 소독

- 저장고나 컨테이너에는 곰팡이나 세균이 남아 존재하며 또한 유통 중 내부 송풍기 바람에 의해 포자가 날려 전체적으로 오염될 수 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소독작업을 해야 함

#### 다. 정산 및 회계 관리

- 수출대금의 정산 주체는 계열화 수출 조직에서 정산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정산해야 함.
  - 물품 선적 후 가능한 빨리(예를 들어 7일 이내에) 정산이 이루어져야 함
  - 수수료율은 운영협의회 결정사항에 따름
- 정산 및 회계에 관한 세부사항은 「계열화 운영협의회」 등에서 구성원이 상호 협의하여 정하고 투명성을 보장해야 함.
- 정산 및 회계 관리 대상은 정부나 지자체 등의 지원금(보조금, 융자금), 수출대금, 국내시장 판매대금 등 「계열화 운영협의회」가 정한 모든 금액을 포함해야 함.
- 필요시 회계처리사항에 대해 매년 회계감사 실시
  - 회계감사비용의 일부를 지원(계열화 업체 평가 인센티브)

## 2.8. 마케팅, 연구개발

- 해외 전시회 및 박람회 참여: 홍보 및 판촉활동
- 해외시장 조사 수행
- 신시장 개척, 우수 바이어 발굴, 다양한 수출상품 개발 등
- 연구개발
  - 포장재 분야: 병을 열처리한 뒤 주스를 진공 포장하여 외부 이물질 침투를 막아 위생적이고, 코팅비닐류를 전혀 사용하지 않아 환경 친화경적 방법 연구



- 브랜드 분야: 자체브랜드 사용
- 기술 분야:
  - 유자 당절임 상태로 1년 냉장보관 가능하여 주문량에 따라 연중 주스 생산 시스템
  - 유자의 홍수출하를 방지하고 유자 생과의 크기와 품질을 고급화시키기 위하여 일본처럼 유자 수확시기 2~3개월 전에 청 유자 상태로 일부 수확하여 향신제 과실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수확 후 유자 생과를 장기간 보관할 수 있는 새로운 유자 장기 저장 방법을 연구 개발
- 상품 분야:
  - 원료를 충분히 사용하며 식품첨가물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포장에서도 환경유해물질을 전혀 사용하지 않음
  - 신상품 개발을 통한 수요 확대 및 창출: 일본의 경우 현재 유자 가공 제품이 250가지 이상 개발되어 판매, 유자 생산량의 70% 이상이 가공용 원료로 이용되어 고부가가치 농산물 가공제품 자리 잡고 있음
  - 유망 유자 신제품: 유자 주스, 유자 간장, 유자식초, 유자 잼, 유자 절임류 등, 각종 식품의 향신료와 유자비누, 유자 입욕제 등 개발
- 유자 신상품 개발을 위하여 한국식품연구원과 유자 생산단체가 협력하여 유자연구개발 사업기금을 확보하여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추진
- 일본의 관련 연구기관 및 생산자 단체 산하 유자 가공공장과 활발한 기술 교류 사업을 추진

## 2.9. 결산 및 사업평가

- 수출기간 종료 후 수출결과 결산 및 공개함.
  - 결산 회의에서 계열화조직 수출 정산내용과 수출 효과 등을 설명함
  - 또한 개선방안과 조직 강화, 수출 증대방안에 대해 논의
  - 이러한 결산보고는 조직원의 신뢰와 결속력을 증대시킴

- 계열화 수출전문조직 운영수익 운영방안 등 협의함.
- 생산농가로 하여금 계열화 업체의 자본에 대해 출자를 유도하고
- 계열화 업체 구성원 간 결속력 강화를 위해 자금적립을 유도함

## 부록1: 일본 후생노동성 수입식품 감시지도 계획<sup>3</sup>

### 1. 수입식품 감시지도계획

- 일본은 2006년도 수입식품 감시지도 계획을 발표하고 금년 5월29일부터 실시되는 포지티브 리스트(Positive List) 제도<sup>4</sup>에 근거하여 가공 수입식품의 잔류농약 검사를 추가대상으로 지정하는 등 전반적인 검역 강화책을 발표하였음.
- 동 수입식품 지도계획으로 일본에 수입되어지는 식품, 첨가물, 기구, 용기 포장 및 장난감등에 이르기까지 국민의 건강에 직간접으로 관련 있는 해당 상품에 대해 검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연간 약 179만 건 수입중량 약 3,400만 톤에 대해 광범위한 감시를 하고 있음.
  - ⇒ 감시 지도계획 강화는 일본의 식량자급율이 약 40%까지 저하된 것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며, 자국에 수입되는 식품에 대한 검역강화를 통해 식량자급율 확보하고 국민의 수입식품 안전요청에 부응하는 차원에서 검역감시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는 의지로 분석됨

### 2. 수입 감시지도 계획 요지

- 2006년도에는 수입산 소고기를 중심으로 광우병 방지를 위하여 상대국에 대한 현지사찰과 검역 시 검사를 강화하고 포지티브 리스트 제도 시행에 따른 기준치 미설정 농약, 동물용 의약품 또는 사료첨가물에 대한 수입 검사를 강화함. 또한, 농약 등의 생산단계에서의 잔류방지 대책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수출국에 대한 조사를 실시함.

3. 농수산물유통공사. 휘모리 품질관리 매뉴얼(파프리카) 인용.

4. 농식품에 관해 잔류농약 허용 리스트를 설정, 허용기준이 초과하는 농식품의 유통을 금지하는 제도. 리스트에 포함되지 않는 성분은 일률기준치 0.01ppm 적용함.

- 모니터링 검사 시의 검사 결과에 따라 검사항목의 추가 개정 등을 실시하며, 전년도 검사 시 다수 위반이 적발된 수산식품의 미생물 오염 등의 감시체제를 강화할 예정이다.

### 3. 수입식품의 감시지도계획 실시에 대한 기본적인 고찰

- 식품안전기본법 제4조에 의거하여 식품안전성의 확보는 국내외 생산단계에서부터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이러한 관점에서 수출국에 있어서의 생산, 제조, 가공 단계에서 수입후의 국내유통에 이르기까지의 각 단계별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함.
- 후생노동성 및 각 검역소에서는 식품 수입시 세관 등 관계기관과 연계하여 다음에 열거하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식품수입업자에 대해 적절한 감시지도를 실시함.
  - 수입식품의 규격 및 기준을 비롯하여 법률에 적합한지 기본적인 정보를 확인
  - 다종다양한 수입식품의 식품위생법상의 상황에 대해 폭넓게 감시하기 위하여 법제28조에 의거한 모니터링검사를 실시
  - 식품위생법상의 위해 발생방지를 위해 법률 위반 개연성이 높은 식품 등에 대해서는 법제26조의 규정에 의거 검사명령을 발동할 것
  - 특정국 또는 지역 또는 특정인으로부터 제조 등이 된 수입식품에 대해 식품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법 제8조 또는 제17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포괄적 수입금지 조치를 강구할 것
  - 범위반을 반복하는 수입자에 대해서는 범위반을 원인을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법 제55조 제2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수입 및 영업을 금지 또는 정지 명령을 내릴 것

- 기타 수입자의 책무로서 자주적(自主的)으로 위생관리를 도모하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수출국의 생산단계에서 법위반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홈페이지 등을 통한 정보제공 및 주재 각국 대사관 및 수입자에 대해 정보 제공 등을 실시
- 또한, 수출국정부에 대한 식품위생법상의 문제 발생시 양국간협의, 전문가 파견, 수출국 정부직원의 일본 연수 등을 통한 기술협력, 수출국 공적 검사 기관에 대한 수출 전 검사 등의 추진을 통해 수출국에서의 위생대책을 추진
- 수입 후 일본 내 유통단계에 있어서는 각 지자체를 통해 감시지도를 실시함과 동시에 검역소 및 지자체 등에서 위반 발견 시에는 본성, 검역소, 지자체 등이 연계하여 수입자에 대한 회수 등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함.

#### 4. 생산지 사정 등 중점적으로 감시지도를 실시하는 항목에 대해

- 법 제27조에 의한 수입식품 신고서 확인
  - 수입자의 신고서에 의해 해당식품이 수입금지 식품인지의 여부, 적정 첨가물이 사용되었는지의 여부, 규격기준 적합성 여부 등에 대해 수입자 서류 및 수출국정부 증명서 등을 통해 준수여부를 철저히 확인
- 법 제28조에 의한 모니터링 검사
  - 검역소가 실시하는 모니터링 검사는 다종다양한 수입식품의 식품위생상의 상황에 대해 폭넓게 감시하며 위반이 발생되었을 때는 수입시의 검사를 강화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본성은 통계학적으로 일정한 신뢰도에 의해 위반검출이 가능한 검사수를 본으로 정하여 식품군별로 위반율 및 수입건수 및 수입중량의 경중, 위반 내용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등을 감안하여 모니터링 검사건수 및 검사항목을 정함

- 본성은 농약 등의 포지티브 리스트 제도 도입에 따라 중점적, 효율적 이고도 효과적인 모니터링검사를 실시하기 위해 해외에 있어서의 규제 상황 등을 감안한 모니터링 계획을 실시
  - 검역소는 모니터링 계획의 검사건수를 실시하기 위해 본성에서 할당한 검사건수에 대해 연간계획을 세워 계획적인 검사를 실시
  - 본성은 생산국 및 기타국가에서 식품 등의 회수 및 건강피해 발생에 관한 정보를 입수한 하여, 모니터링 검사 등에 의해 법률위반이 발견되었을 경우 필요시 각 검역소에 대해 해당 수입식품 등에 대한 검사강화를 지시
- 법 제28조에 의한 모니터링검사 이외의 검사
    - 검역소는 수입신고 내용을 토대로 수입시의 초기 검사, 수송도중에 사고가 발생한 수입식품 등의 검사를 실시
- 법 제26조의 의거한 검사명령
    - 검사명령은 후생노동대신이 식품위생법상의 위해 발생방지를 위하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수입자에 대해 검사를 지시하는 것임
    - 구체적으로는 동일 제조업체가 수출하는 동일의 제품에서 건강피해 발생 또는 건강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제품에 대해서는 즉시 검사명령 대상으로 지정하며, 잔류농약 및 잔류 동물용 의약품 등에 있어서의 동일 수출국 및 동일 제조업체가 동일 수입식품에서 모니터링 검사 등의 결과 2회 이상 위반이 발견될 경우 등 범위반의 개연성이 높다고 예상되어지는 수입식품에 대해서는 검사명령을 발동함
    - 또한, 검사명령 후 수출국에 있어서 원인규명 또는 그에 대응한 수출국의 새로운 규제, 검사체제의 강화 등의 재발방지 대책이 확립되는 등 위반 식품이 일본에 수출되어질 우려가 없는 것이 확인된 경우, 검사명령을 해제함

- 법 제8조 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포괄적 수입금지 조치
  - 특정국 또는 지역에서 특정인에 의해 제조된 식품에 대해 해당 식품 등의 검사건수 전체에 대한 범위반 건수의 비율이 대체적으로 5%이상일시,
  - 생산지에서 식품위생상의 관리상황 등으로 계속하여 법률을 위반하는 식품이 수입될 우려가 있는 경우, 인체에 해가되는 정도 등을 감안하여 해당 수입식품에 대해 후생노동대신은 약사·식품위생심의회의 의견을 들어 수입금지 조치를 취함
- 해외에서의 문제발생 정보 등에 근거한 긴급대응
  - 본성은 해외에서의 식품위생상의 문제 발생 시의 정보 등을 입수하여 해당 상품의 수입상황을 조사하여 지자체 또는 검역소를 통해 유통, 재고 상황을 조사, 필요시 수입자등에 대해 회수 등의 조치를 취하고 검역 강화를 지시함

## 5. 수출국에 대한 위생대책의 추진

- 수출국에 대해 위생규제에 관한 연수회 등을 통해 수출국의 정부 관계자, 생산자 등에 대해 정보의 주지를 기하며, 2005년도에 발생빈도가 높았던 곰팡이독, 유해물질 함유, 미생물오염, 잔류농약 등 범위반이 높은 국가를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위생대책을 요구해 나감.

## 6. 수입자에 대한 자주(自主的)인 위생관리 실시 지도

- 수입자에 대한 기본적인 지도
  - 법령에 근거한 수입신고, 검사제도, 규격기준 등에 대해 주지를 기하며, 수입자 스스로 수입식품 안전성 확보에 노력하도록 강습회와 수입신고 시 등의 기회를 통해 지도 실시

- 수입 전 지도 실시
  - 수입자는 수입 전 생산자로부터 사전에 필요자료를 입수하여 해당식품에 대한 안전성, 약사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해 확인토록 지도
- 수입 전 지도에 의한 범위반 발견시의 대응
  - 수입자에 의한 사전 안전성 확인결과, 해당 식품의 범위반이 판명될 경우 수입자에 대해 개선 시까지 수입을 보류하도록 조치
  - 개선결과 안전성이 확보되더라도 샘플수입 등을 통해 해당 식품이 규격 기준 등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하도록 지도
- 자주(自主)검사 실시
  - 초회 수입 시에는 수입식품 등의 성분규격 및 농약, 동물용 의약품, 첨가물 등의 사용상황에 근거하여 해당 식품 등이 법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 검사항목에 대해 자주검사를 실시하도록 지도
  - 지속적인 수입 시 수입빈도 등을 감안하여 수입자에 대해 해당 수입식품의 농약, 동물용 의약품, 첨가물 등의 사용상황을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동종의 식품의 위반정보 등을 참고로 하여 정기적으로 자주검사를 실시토록 지도
- 수입식품 등의 기록 작성 및 보존
  - 수입자에 대해 수입식품 등의 유통 상황에 대해서 확인이 언제든지 가능하도록 해당식품에 대한 수입 시 기록, 판매시의 기록 등이 적정하게 작성 및 보존 될 수 있도록 지도

## 7. 위반이 판명된 경우의 대응

- 통관전의 식품에 대해서는 검역소가 수입자에 대해 폐기, 반송 등의 지시
  - 통관후의 식품에 대해서는 수입자 소재지 관할 지자체 등이 수입자에 대해 회수 등의 지시를 실시하며, 통관후 식품이 전량 보세창고 등에 보관



되어 있는 경우에는 검역소가 수입자에 폐기, 반송 등의 잠정 조치를 취하고 이후 해당 지자체의 지시에 따르도록 지도

- 지자체등에 의해 위반식품이 발견되었을 경우, 해당 지자체의 연락을 받아 본성에서는 검역소에 대해 해당 식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과 동시에 검역 강화 조치를 취함
- 검역소는 위반 수입자에 대한 재발방지를 위해 아래 사항에 대해 지도
  - 해당식품 등의 위반원인을 조사하여 결과가 판명되면 검역소에 보고할 것
  - 동일제품을 재수입할 경우에는 위항의 원인을 조사하여 개선이 된 것을 확인한 후 필요시 수입자 스스로가 현지조사 및 수출국내의 검사, 샘플 등의 검사 등에 의해 검증을 함과 동시에 검역소에 보고할 것
- 본성은 식품안전성의 확보관점에서 범위반을 반복하는 수입자 또는 그러한 위반 우려가 있는 수입자에 대해서는 재발방지 차원을 목적으로 법 제55조 제2항에 의거 영업금지 또는 정지를 명령
- 검역소는 악질적인 범위반 사례 등에 대해서는 고발조치
- 범위반 수입자(원칙적으로 서면에 의한 행정지도 대상이 되는 수입자를 포함하나, 위반이 경미하며 범위반에 대해 즉시 개선을 취한 수입자는 제외)에 대해서는 그 명칭, 소재지, 대상 수입식품 등의 위반 정보를 홈페이지에 게재·공표

## 8. 기타 감시지도 실시를 위한 필요사항

- 검역소는 모니터링검사를 원활히 실시되도록 수입자, 통관업체 및 보세창고 업체를 대상으로 모니터링 계획의 주지를 도모
- 또한, 본성은 검사명령 발동, 검사강화 등에 관한 정보에 대해 공표
- 감시 결과의 공표

부록2: 최근 일본 수입 통관시 잔류허용기준 초과 농약<sup>5</sup>

농약 품목명	상표명	시기	대상작물	비 고
Chlorpyrifos 크로르피리포스 (수화제, 유제, 입제) 크로르피리포스입상수화제 크로르피리포스미탁제	더스만, 명사수, 충모리, 그로포, 폭격기, 크로르피리포스 선발대 거포	2001	파	미등록
		2003	오이 미나리	미등록
Dichlorvos(DDVP) 디디브이피유제	디디브리피, 옥구슬	1999	오이	미등록
		2003	파프리카	미등록
		2005	딸기	미등록
EPN 이피엔유제	이피엔, 무궁탄	1999	방울토마토	미등록
		2000	방울토마토	
Ethoprophos 에토프입제	모캡, 에스캡	2001 2002	홍고추	안전사용기준 미준수 미등록
		2003	파프리카	
		2003	피망	
Methidathion 메치온유제	수프라사이드, 명궁 수—라치온, 메치사이드, (영일, 에스엠)메치온	2001	파프리카	미등록
Chlorpyrifos 크로르피리포스 함유농약	강타자, 진굴탄 등	2005 2006	파프리카	미등록 안전사용기준위반

※ ‘그류’ 등으로 부르던 크로르피리포스 성분함유 품목명은 잔류경감방안 조치의 일환으로 ‘크로르피리포스’로 명칭을 통일하고, 상표명 위에 『크로르피리포스 성분함유』라는 문구를 표기토록 하였습니다(2004. 5. 24).

5. 농수산물유통공사. 휘모리 품질관리 매뉴얼(파프리카) 인용.

### 일본 수출농산물에 대한 사용금지 농약

성분명	농약품목명	상 표 명*	비 고
Cyhexatin	싸이헥사틴수화제	영일싸이틴, 프리트란, 응골로, 사이헥사틴	응애약
	비펜스린·사이헥사틴 수화제	비상구	
Azocyclotin	아씨틴수화제	페로팔, 경농아씨틴, 이비엠싸이트, 응애왕	응애약
	아조싸이클로틴 액상수화제	응애왕	응애약
	피리다벤·아조싸이클로틴 수화제	완승	응애약
Daminozide	비나인수화제	미성비나인	신장억제약

\* 일본에서 불검출 대상농약 중 우리나라에서 생산 공급 되고 있는 농약

## 수출농산물농약사용지침(일본)

적 용 병해충	농 약 품 목 명	상 표 명	안전사용기준		잔류허용기준 (ppm)	
			수확전 살포일	살포 일수	일본	한국
갈색무늬병	Tebuconazole 테부코니졸(우제)	호리쿠어	10	3	0.5	0.5
	Fluazinam 후루아지남(수화제)	후룬사이드	5	4	(0.3)	0.3
반점세균병	KasugamycinCopper oxychloride 가스란(수화제)	가스란	2	5	(0.04) 면제	- 면제
	Copper hydroxite 쿠퍼(수화제)	코사이드, 쿠퍼사이드 (경농, 영일)쿠퍼	-	-	면제	면제
세균성점무 늬병	Kasugamycin 가스가마이신(입상수화제)	메가폰	2	3	(0.04)	-
	Kasugamycin Thiophanate-methy 가스가마이신 지오파네이트메칠(액상수화제)	골든벨	2	3	(0.04) (3c)	- 5c
액 병	Dimethomorph 디메쏘모르프(수화제)	포름, 에이스,(영일) 디메쏘모르프	3	4	(2)	0.5
	Dimethomorph Mancozeb 디메쏘모르프만코지(수화제)	포름만	14	3	(2) (1d)	0.5 1d(Codex)
	DimethomorphCopper oxychloride 디메쏘모르프염기성염화동 (수화제)	포름씨	3	4	(2) 면제	0.5 면제
	DimethomorphPropineb 디메쏘모르프 프로파네브(수화제)	균자비	7	3	(2) (1d)	0.5 1d(Codex)
	Cyazofamid 시아조파미드(액상수화제)	미리카트	3	4	1	2(고추)
	Azoxystrobin 아족시스트로빈	오티바, 아족시스트로빈	3	5	(2)	2
	AzoxystobinChlorothalonil 아족시스트로빈 크로로타로닐(액상수화제)	오티바옵티	3	3	(2) 7	2 7
	OxadixylChlorothalonil 옥시딕실 타로닐(수화제)	양콜, 크린히	14	4	(5) 7	0.1 7

적 용 병해충	농 약 품 목 명	상 표 명	안전사용기준		잔류허용기준 (ppm)	
			수확전 살포일	살포 일수	일본	한국
역 병	Oxadixyl · Propineb 옥사프록(수화제)	군케어플러스	7	4	(5) (1d)	0.1 1d(Codex)
	Zoxamide · Cymoxanil 족사מיד, 싸이녹시닐(수화제)	카니발	3	4	(0.3) (0.2)	0.3 0.1
	Copperhydroxide 쿠퍼(수화제)	코사이드, 경농쿠퍼, 영일쿠퍼, 쿠퍼사이드 쿠퍼	-	-	면제	면제
	Propamocarb hydrochloride 파모(액제)	프리엔	21	2	1	1
	Pyraclostrobin · Dimethomorph 피라클로스트로빈 디메쏘모르프 (입상수화제)	캐스팅, 카브리옴	7	3	(1) (2)	0.5 0.5
	Fluazinam 후루아지남(수화제)	후론사이드	5	4	(0.3)	0.3
	Fluazinam 후루아지남(액상수화제)	모두랑	7	4	(0.3)	0.3
젯빛곰팡 이병	Diethofencarb · Carbendazim 디에토펜카브 · 가벤다(수화제)	깨끄탄	7	3	5 (3)	5 5
	Dichlofluanid (디크론(과립혼연제))	유파렌	7	5	15	2
	Dichlofluanid (디크론(수화제))	유파렌	3	3	15	2
	Triflumizole 리프졸(수화제)	트리후민, 리프졸	3	4	5	5
	Iprodione 이프로(수화제)	로브랄, 군사리 새시로, 이비엠조테나 새노브란	5	3	10	5
	Iprodione · Thiophanate-methyl 이프로지오판(수화제)	다스린, 이프로지오판	3	4	10 (3c)	5 5c
	Thiophanate-methyl · Triflumizole 지오판리프졸(수화제)	곶타임 지오판리프졸	3	4	(3c) 5	5c 5
Thiophanate-methyl · Sulfur 지오판유황(액상수화제)	이싸유황 지오판유황	3	4	(3c) 면제	5 면제	

적 용 병해충	농 약 품 목 명	상 표 명	안전사용기준		잔류허용기준 (ppm)	
			수확전 살포일	살포 일수	일본	한국
젓빛곰팡이 병	Tebuconazole, Tolyffuanid 터부코나졸 토릴후루아니드 (수화제)	엄지	5	3	0.5 (2)	0.5 -
	Fenhexand 펜엑사미드(수화제, 액상수화제)	텔도	3 5	3 3	2	-
	Polyoxin B 포리옥신(수용제)	더마니	7	5	(0.05)	-
	Procymidone (프로시미돈(과립혼연제))	스미렉스, 너도사 영일프로파, 프로파	5	3	5	5
	Procymidone 프로시미돈(수화제)	스미렉스, 팡이탄, 너도사, 아비넴오케이, 영일프로파, 팡자비, 프로파	5	3	5	5
	Fluazinam 후루아지남(수화제)	후론사이드	5	4	(0.3)	0.3
탄저병	Carbendazim · Kasugamycin 가벤다, 가스신(수화제)	고추탄	7	4	(3) (0.04)	5 -
	Kasugamycin · opper oxychloride 가스란(수화제)	가스란	2	5	(0.04) 면제	- 면제
	Dimethomorph · Mancozeb 디메쓰모르프 만코지(수화제)	포름만	14	3	(2) (1d)	0.5 1d(Codex)
	Dithianon 디치(액상수화제)	텔란	7	5	(0.3)	0.3
	Dithianon 디치(임상수화제)	텔란	7	3	(0.3)	0.3
	Azoxystrobin 아족시스트로빈(액상수화제)	오티바, 아족시스트로빈	3	5	(2)	2
	Oxadixyl · Chlorothalonil 옥시딕실, 타토닐(수화제)	양콜, 크린히	14	4	(5) 7	0.1 7
	Thiophanate-methyl 지오판(수화제)	톱신엠, 톱네이트엠,(삼공, 정밀, 정보, 아리)지오판, 탑건, 이비엠지이트, 슈퍼톱탄	3	3	(3c)	5c
	Thiophanate-methyl · Triflumizole 지오판리프졸(수화제)	곤타임, 지오판리프졸	3	4	(3c) 5	5c 5

적 용 병해충	농 약 품 목 명	상 표 명	안전사용기준		잔류허용기준 (ppm)	
			수확전 살포일	살포 일수	일본	한국
탄저병	Thiophanate-methyl · Sulfur 지오판유황(액상수화제)	아씨유황, 지오판유황	3	4	(3c) 면제	5c 면제
	Kresoxim-methyl 크레속심메칠(입상수화제)	해비치	7	2	2	2
	Kresoxim-methyl · Carbendazim 크레속심메칠,가벤다짐(수화제)	젤존	5	3	2 (3)	2 5
	Chlorothalonil 타로닐(수화제)	다코닐,금비라,플로루,새나리, 토우크, (열일,아리)타로닐	7	4	7	7
	Tebuconazole 테부코니졸 (수화제, 액상수화제)	실바코, 스텔스	10	3	0.5	0.5
	Tebuconazole 테부코니졸(유제)	호리쿠어	10	3	0.5	0.5
	Prochloraz manganese complex 프로라츠망간(수화제)	스포르곤,프로라츠망간	5	2	(1)	3
	Pyraclostrobin 피라클로스트로빈(유제)	카브리오	2	3	(1)	0.5
	Pyraclostrobin boscalid 피라클로스트로빈,보스칼리드 (입상수화제)	벨리스플러스	2	3	(1) 1.2	0.5 -
	Pyraclostrobin.dimethomorph 피라클로스트로빈, 디메쏘모르프(입상수화제)	캐스팅, 카브리옴	7	3	(1) (2)	0.5 0.5
Fluazinam 후루아지남(수화제,액상수화제)	후론사이드, 모두랑	5 7	4 4	(0.3)	0.3	
환가루병	Myclobutanil 마이탄(수화제)	시스텐	7	3	1	1
	DBEDC(dodecyl benzensulf onate bis-ethylene diamine copper(II) complex salt) 산코(유제)	산요루	3	3	(5)	-
	Azoxystrobin 아족시스트로빈(액상수화제)	오리바, 아족시스트로빈	3	5	(2)	2

적 용 병해충	농 약 품 목 명	상 표 명	안전사용기준		잔류허용기준 (ppm)	
			수확전 살포일	살포 일수	일본	한국
흰가루병	Suffer 유황(입상수화제)	쿠무러스	-	-	면제	면제
	Tebuconazole 테부코나졸(수화제)	실바코	10	3	0.5	0.5
	Tenacozazole 테트라코나졸(유탁제)	에머난트	3	3	(1)	1(고추)
가세미나병	Dlazinon 다수진(입제)	다이하톤, 시니나, 다이하콤, 땅땅, 다이진, 다수진	정식전	1	0.1	0.5
꽃노랑 총채벌레	Spinosad 스피노사드(액상수화제)	올가미, 심포니	2	3	2	0.1(수박)
	Acetamiprid 아세타미프리트(수화제)	모스피란, 아세타미프리트	3	5	5	5
	Acetamiprid 아세타미프리트(액제)	신엑스	2	3	5	5
	Emamectin benzoate 에마멕틴벤조에이트(유제)	에이팜	3	3	(0.2)	0.05
	Chlorfenapyr 클로로헵나피르(액상수화제)	섹큐어, 플로르헤나피르	3	3	(1)	0.7
	Clothianidin Chlorfenapyr 클로치아니딘 클로로헵나피르(유제)	섬광	3	3	3 (1)	2 0.7
담배나방	Delthamethrin 델타린(액상수화제)	데시스, 델타린	3	4	0.5	0.2
	Delthamethrin 델타린(유제)	데시스, 장원, 에스엠델타린, 델타린	3	3	0.5	0.2
	Lufenuron 루페누론(유제)	파밤탄, 매치	3	3	1	0.5
	Methomyl 메소밀(수화제)	란네이트,(성보, 미성, 이비엠, 영일)메소밀	7	2	(0.7)	1
	Methomyl 메소밀(dor제)	란네이트,(삼공, 동부, 정밀, 미성, 성보, 이비엠)메소밀, 메소린	7	2	(0.7)	1



적 용 병해충	농 약 품 목 명	상 표 명	안전사용기준		잔류허용기준 (ppm)	
			수확전 살포일	살포 일수	일본	한국
담배나방	Methoxyfenozide 메톡시페노자이드(액상수화제)	런너	7	3	(3)	-
	Bifenthrin 비펜스린(입상수화제)	캡처	10	3	(0.4)	0.5
	Acetamiprid, Indoxacarb 아세타미프리드, 인독사카브(수화제)	맹타	2	2	5 (1)	5 1
	Alpha-cypermethrin 알파스린(유제)	화스타, 이미엠하나로, 바이엘알파스린, 시원탄, 영일알파스린	3	3	2	0.5
	Alpha-cypermethrin 알파싸이퍼메스린(입상수화제)	콩코드	3	3	2	0.5
	Emamectin benzoate 에마멕틴벤조에이트(유제)	에이팜	3	3	(0.2)	0.05
	Esfenvalerate 에스펜발러레이트(유제)	적시타	3	5	0.5	0.5
	Esfenvalerate-Malathion 에스펜발러레이트 마라치온(유제)	왕스타	7	5	0.5 0.5	0.5 0.5
	Indoxacarb 인독사카브(수화제)	암메이트	3	3	(1)	1
	Indoxacarb 인독사카브(액상, 입상수화제)	스튜어드골드 수튜어드, 아바타	5 5	2 3	(1)	1
	Diflubenzuron 주론(수화제)	디밀린, 초심	3	3	(1)	1
	Chlorfluazuron 쿠로르푸라이주론(유제)	아타브론	3	3	2	0.5
	Pinniphos-methyl · Cypermethrin 포리스(유제)	싱싱	3	3	1 2	1 0.5
	Fenvalerate 프로싱(유제)	스미사이딘, 아비엠테이트 떨나방탄	10	2	0.5	0.5
	Lambda-cyhalothrin 할로스린(수화제)	주렁, 바로쌩	5	3	1	1
	Lambda-cyhalothrin 할로스린(유제)	주렁, 침병, 할로스린	10	2	1	1

적 용 병해충	농 약 품 목 명	상 표 명	안전사용기준		잔류허용기준 (ppm)	
			수확전 살포일	살포 일수	일본	한국
오 이 총채벌레	Spinosad 스피노사드(액상수화제)	올가미, 심포니	2	3	2	0.1(수박)
	Thiamethoxam 치아메톡삼(입상수화제)	아타라, 치아메톡삼	3	3	(1)	1
	Chlorfenapyr · Bifenthrin 크로르헨마피르 · 비펜스린 (수화제)	파발마	3	3	(1) 0.4	0.7 0.5
온실라루이	Imidachoprid 이미다클로프리트(입제) 이미다클로프리트(액상수화제)	코니도, 메테랑, 영일이미다, 노다지	30 30(양액)	2 2	(3)	1
작은뿌리 파 리	Imidacloprid 이미다클로프리트(수화제)	코니도, 영일이미다, 코사인	3	4	(3)	1
	Diflubenzuron 주론(수화제)	디밀린, 초심	3	3	(1)	1
진딧물	Dinotefuran 디노테푸란(수화제)	오신	3 30(양액)	3 2	(5)	0.5(고추)
	Dinotefuran 디노테푸란(입상수화제)	펜텀	5	2	(5)	0.5(고추)
	Metomyl 메소밀(수화제)	란네이트, (성보, 미성, 이비엠, 영일)메소밀	7	2	(0.7)	1
	Beta-cyfluthrin 베타사이플루스린(유제)	불독, 최고봉	7	6	5	0.2
	Bifenthrin · Imidacloprid 비펜스린 · 이미다클로프리트(수화제)	코만도	3	2	(0.4) (3)	0.5 1
흰가루병	Acetamid 아세타미프리트(수화제)	모스피란, 아세타미프리트	3 30(양액)	5 2	5	5
	Apha-cypermethrin 알파스린(유제)	화스타, 이비엠하나로, 바이엘알파스린, 시원탄, 영일알파스린	3	3	2	0.5
	Esfenvalerate 에스펜발러레이트(유제)	적시타	3	5	0.5	0.5

적 용 병해충	농 약 품 목 명	상 표 명	안전사용기준		잔류허용기준 (ppm)	
			수확전 살포일	살포 일수	일본	한국
진딧물	Esfenvalerate · Malathion 에스펜발러레이트마라치온 (유제)	왕스타	7	5	0.5 0.5	0.5 0.5
	Esfenvalerate · Fenitrothion 에스펜발러레이트 · 에프(유제)	신파마치온	3	4	0.5 0.2	0.5 0.1
	Imidacloprid 이미다클로프리트(수화제)	코니도, 영일이미다, 코사인	3	4	(3)	1
	Imidacloprid 이미다클로프리트(액상수화제)	코니도	5 30(양액)	3 2	(3)	1
	Imidacloprid 이미다클로프리트(입제)	코니도, 베테랑, 영일이미다, 노다지	정식기	1	(3)	1
	Thiamethoxan 치아메특삼(입상수화제)	아타라	정식기	1	(1)	1
	Thiamethoxam 치아메특삼(입상수화제)	아타라, 치아메특삼	3 30(양액)	3 2	(1)	1
	Thiacloprid 치아클로프리트(액상수화제)	칼립소	3 30(양액)	3 2	(5)	1
	Carbosulfan · Imidacloprid 카보설펜 · 이미다클로프리트 (수화제)	새강자	3	3	(1) (3)	- 1
	Clothianidin 클로치아니딘(수화제, 액상수화제, 수용성입제)	빅카드, 세시미, 똑소리	3	3	3	2
	Clothianidin 클로치아니딘(입제)	명가, 빅카드	정식진	1	3	2
	Pirimiphos-methyl · Cypermethrin 포리스(유제)	싱싱	3	3	1 2	1 0.5
	Fenvalerate 프로싱(유제)	스미사이딘, 이비엠데이트, 털나방탄	10	2	0.5	0.5
	Pymethrozine 피메트로진(수화제)	체스	3 30(양액)	4 2	2	1
	Pymetrozine 피메트로진(입제)	체스	육묘상	1	2	1

적 용 병해충	농 약 품 목 명	상 표 명	안전사용기준		잔류허용기준 (ppm)	
			수확전 살포일	살포 일수	일본	한국
진딧물	Lambda-cyhalothrin 할로스린(수화제)	주렁, 바로짹	5	3	1	1
	Lambda-cyhalothrin 할로스린(유제)	주렁, 참병. 할로스린	10	2	1	1
	Lambda-cyhalo- thrin · Pirimiphos-methyl 할로스린 · 피리포(유제)	싱글	5	2	1 1	1 1
차면지응애	Chlorfenaper 클로르헨나피르(액상수화제)	섹큐어, 플로르헨나피르	3	3	(1)	0.7
	Tebufenpyrad 테부페녹수론(분산성액제)	파라니카	3	3	(0.5)	0.5
	Flufenoxuron 플루페녹수론(분산성액제)	카스케이드, 영일플루페녹수론, 플루페녹수론	7	3	(2)	0.3
	Pyridaben 피리다벤(수화제)	산마루	3	3	3	3

## 참고 문헌

---

- 권병선 외. 1999. “남부지역에서의 유자 재배 및 출하 실태” 순천대학교논문집 18권.  
 농림수산식품부. 2008. 「'08년 농식품 수출 목표 및 중점 추진계획(안)」 내부자료.  
 농림수산식품부. 2006. 「감귤 브랜드 경영지침서」.  
 농수산물유통공사. 2008. 「주요 수출 품목별 대책」 내부자료.  
 농촌진흥청. 「주요작목영농순기표」 (행정간행물 31200-51763-67).  
 박준근. 1996. “참다래, 단감, 유자 농가의 생산성 제고 및 수출확대 방안”. 농업경제  
 연구 제37권.  
 이철호 외. 1987. “유자차의 관능적 품질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식문화학회 제2권 2호.  
 허길행 외. 2003. 「농산물 공동계산 표준모델 개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인터넷 자료>

-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대전 홈페이지 [www.knrda.go.kr](http://www.knrda.go.kr)  
 대금유자농장 홈페이지 [www.idaekum.co.kr](http://www.idaekum.co.kr)  
 청해농원 홈페이지 [www.유자차.kr](http://www.유자차.kr).  
 한아름 유자농장 홈페이지 [www.친환경유자.kr](http://www.친환경유자.kr).

---

**C2008-19-6**

**유자차 계열화 수출전문조직 운영모델 및 매뉴얼**

---

등 록 제6-0007호(1979. 5. 25)  
인 쇄 2008. 6.  
발 행 2008. 6.  
발행인 최정섭  
발행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30-71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동 4-102  
02-3299-4000 <http://www.krei.re.kr>  
인 쇄 경희정보인쇄(주)  
02-2263-7534 <http://www.khip.co.kr>

---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
-